

한국법학원 · 사법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일 시 : 2021. 9. 10.(금) 14:00~16:30
- 장 소 :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
(Zoom 웨비나)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일시 2021년 09월 10일(금) 14:00-16:30

장소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

발표자/토론자/사회자만 현장 참석



온라인 접속

<https://us02web.zoom.us/j/81380714498>

초대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법학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문헌 인용(citation)방법의 통일화」라는 주제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람직한 법학 연구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고양된 법학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 / 사법정책연구원장 홍 기 태

변호사인정연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신청 하러가기 ->

<http://naver.me/GTgJLAZu>



시간	프로그램	
14:00 -14:20	• 개회사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 축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회 :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문 교수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4:20 - 15:20	[제1세션]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 -
	• 좌 장 이연갑 연세대 법전문 교수 /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발 표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신영수 경북대 법전문 교수	
	*세션 소개: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는 정확한 인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세션에서는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우선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한국에서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을 위해 행해졌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비교하며, 앞으로 통일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추후에 이루어질 논의에 여러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5:20 -15:30	휴식	
15:30 - 16:30	[제2세션]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확산 및 지속 발전의 모색 -
	• 좌 장 최봉경 서울대 법전문 교수 • 발 표 정차호 성균관대 법전문 교수 • 토 론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소개: 법률문헌 인용방법과 관련하여, 한국법학교수회가 2000년 하나의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시안을, 2017년 증보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들 중 하나를 인용방법의 기준으로 채택한 학술지의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첫째, 그 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품질의 문제'와 둘째, 더 중요하게 그 안을 기준으로 채택하게 하려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확산의 문제'로 보았다. 이에 ①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출발점으로 하여, ② 주요 학술지가 제시하고 있는 인용방법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③ 주요 대학의 법학연구소장들이 인용방법의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집단지성에 의한 인용방법의 정립을 통해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확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인용방법의 품질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므로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의처 한국법학원 02-752-7481/753-6002 ksl@lawsociety.or.kr kcklk@daum.net



차 례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개회사1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개회사2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축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제1세션	◆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 － ▶ 발표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1 ▶ 토론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 40
제2세션	◆ 법률문헌 작성 · 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제고, 확산 및 지속적 관리의 방안 ▶ 발표 정치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43 ▶ 토론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0

개 회 사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

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오늘 사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과 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학자, 실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를 위한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한국법학원장 권오곤입니다.

학자들 뿐 아니라 실무가들, 최근에는 일선 법원의 판사님들도 논문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판결문에서 판례나 문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나 문헌을 인용하는 목적은 필자가 인용하려는 판례 또는 문헌을 정확히 지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지시된 문헌을 찾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면서, 동시에 논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제한된 지면 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례와 논문의 인용 방법이 사람마다 또는 문헌마다 다른 경우 독자의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인용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영국, 미국, 독일 등 법률문화가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각종 부호와 약어를 동원하여 표준화된 인용방법을 정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러 선배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한국법학교수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각각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해 왔고 한국법학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임기 내에 그에 관한 제안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데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표준화되어 법률가 모두에게 통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큼니다.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0.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

개 회 사

사법정책연구원장 홍 기 태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간접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각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법정책연구원이 한국법학원과 함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되었습니다.

법학 논문 및 법률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문헌 및 법령, 판례를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은 해당 논문 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절을 방지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법률문헌 인용방법은 정확성, 적합성 및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통일화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면, 법학계의 연구 역량과 연구 윤리를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미 법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블루북(the bluebook)」과 같은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이 마련되어 널리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일은 매우 힘들고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법률문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이 법학계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년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나름의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2017년 증보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 방안에 관하여, 법학계 뿐만 아니라 법조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사회와 발표를 맡아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0.

사법정책연구원장 홍 기 태

■ 축 사

축 사

법원행정처장 김 상 환

존경하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님,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법학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이 함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학 논문이나 법률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법령, 판결 및 각종 법률문헌을 인용하게 됩니다. 인용된 법령, 판결 및 법률문헌이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표시되어야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각종 법률문헌의 저작권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를 모색하는 일은 바람직한 법학 연구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노력에도 우리나라 법학계 구성원들 사이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학술 세미나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는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법학계에서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마침내 통일적인 인용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귀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분들과 수고해 주신 한국법학원,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0.

법원행정처장 김 상 환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김 정 환

I. 들어가며

법률문헌의 작성에서 정확한 인용의 중요성은 해당 문헌의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강조된다. 정확한 인용은 작성자가 참고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헌을 읽는 독자에게는 저자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추가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는 작성자와 독자 사이에서 생각의 다리를 놓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인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혼동의 여지가 적고, 가능한 한 간략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인용할 수 있는 인용방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많은 법학 커뮤니티에서는 앞에서 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고려해보아야 할 다른 점은 가능한 법학 커뮤니티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일적인 인용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학 커뮤니티 내에서 파편화, 분절화된 인용 방식을 개별적으로 고집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인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법학 커뮤니티의 주도로 통일적인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다소 존재하였으나 그 효과가 마냥 긍정적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률문헌 인용의 목적과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

* 이 글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위하여 준비한 글이며, 발표문의 성격상 인용이나 표현 등과 같은 여러 면에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이 발표문에 대한 인용을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의 예를 코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존 시도에 대해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법률문헌 인용의 목적과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필요성

1. 법률문헌 인용의 목적

법률문헌에서 저자가 인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인용을 통해 해당 문헌의 작성자는 자신이 참고한 자료와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한다.¹⁾ 두 번째로 인용을 통해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자가 참고한 자료나 해당 부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²⁾ 세 번째로 독자로 하여금 작성자가 참고한 문헌을 참고함으로써 저자의 주장에 대한 보다 충분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³⁾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법률문헌의 인용은 단순히 저자가 참고한 자료를 표시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⁴⁾ 적절한 인용을 통하여 저자와 독자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즉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법률문헌에서의 인용은 일종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⁶⁾

1) Jennifer L. Cordle, *ALWD Citation Manual: A Grammar Guide to the Language of Legal Citation*, 26 U. Ark. Little Rock L. Rev. 573, 581 (2004); Peter W. Martin, *Introduction to Basic Legal Citation* § 1-200 (2020).

2) Peter W. Martin, *Introduction to Basic Legal Citation* § 1-200 (2020); Carol Bast & Susan W. Harrell, *Legal Citation for the 21st Century*, 19 J. Paralegal Educ. & Prac. 15 (2003).

3) Carol M. Best & Susan Harrell, *Has the Bluebook Met Its Match - The ALWD Citation Manual*, 92 Law Libr. J. 337, 338 (2000); Peter W. Martin, *Introduction to Basic Legal Citation* § 1-200 (2020).

4) Cordle, *supra* at 581.

5) *Id.*

6) Melissa H. Weresh, *The ALWD Citation Manual: A Coup de Grace*, 23 U. Ark. Little Rock L. Rev. 775, 805 (2001).

2.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필요성

가. 법학 커뮤니티에서의 혼란 방지

법률문헌에서의 인용이 일종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끼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 어법이 상호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⁷⁾ 언어에서의 문법과 마찬가지로 인용에서는 문장부호의 사용이나 공백 설정, 대문자화(capitalization), 약어(abbreviation) 사용 등의 규칙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⁸⁾ 이러한 규칙이 사용자 사이에서 정립되지 않아 불완전하게 공유될 경우에는 저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전달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의 규칙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⁹⁾ 반대로 잘 정립된 합리적인 인용 규칙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자의 주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인용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⁰⁾

또한 인용의 규칙이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저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표절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며,¹¹⁾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여 저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표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적 인용 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²⁾

나. 연구의 효율성 추구

198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인용문헌의 관리 및 참고문헌 작성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EndNote나 RefWorks, Zotero와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bibliography management software, BMS)이 개발·활용되고 있다.¹³⁾ 오늘날 서지관리 프로그램은 단순히 논문작성에 필요한

7) Paul E. McGreal, *There Is No Such Thing as Textualism: A Case Study in Constitutional Method*, 69 Fordham L. Rev. 2393, 2436 (2001).

8) Ira P. Robbins, *Semiotics, Analogical Legal Reasoning, and the Cf. Citation: Getting Our Signals Crossed*, 48 Duke L.J. 1043, 1044-1045 (1999).

9) Cordle, *supra* at 582.

10) 김정오, “법학에서의 인용방법: 미국의 인용규칙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6., 73면.

11) 상계논문.

12) 상계논문.

13) 최영준, “개인 연구정보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웹 기반 서지관리 툴 “RefWorks””, 디지털도서관 2007년 가

문헌관리에서 벗어나 연구자 개인의 연구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¹⁴⁾ 최근에는 개인용 PC에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¹⁵⁾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법학에서는 이와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의 활용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표준화된 인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지관리 프로그램의 활용이 연구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연구효율성 증대라는 점에서도 법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인용방법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기술 발전에 기여

최근 법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과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 tech)에 관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¹⁶⁾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기술은 법학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률문헌 정보 조사(legal research)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¹⁷⁾ 인용방법과 관련해서 보자면 인용 스타일에 따라 문헌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타일에 맞는 인용을 생성해내는 인용 생성기(citation generator)¹⁸⁾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구현방법 중 최근 관심의 중심에 있는 머신러닝의 구현방법으로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반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등을 들 수 있는데,¹⁹⁾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세트(seed set)²⁰⁾의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²¹⁾ 우리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용

을호(통권 제47호), 2007. 9., 91면.

14) 상계논문, 92면.

15) 상계논문, 95면.

16) Lauri Donahue, *A Primer 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egal Profession*, JOLT Digest, <https://jolt.law.harvard.edu/digest/a-primer-on-using-artificial-intelligence-in-the-legal-profession> (last visited Aug. 25, 2021).

17) *Id.*

18) 예를 들어 Citation Machine®, <https://www.citationmachine.net/> (last visited Aug. 25, 2021); MyBib, <https://www.mybib.com/#/projects/oD38KQ/citations> (last visited Aug. 25, 2021) 등이 있다.

19) Donahue, *supra*.

20) 샘플 세트(sample set)라고도 하며 컨트롤 세트(control set) 혹은 훈련 세트(training set)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김도훈,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기술지원 검토에 관한 소고”, IT와 법연구 제14집, 2017. 2., 389면의 번역을 따라 기초세트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생성기 개발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렇다면 그 전제로서 인공지능의 학습효율을 높일 방법으로 통일된 인용방안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법학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

법률문헌에서 인용된 사항을 읽고 이해하며, 인용 규칙을 따라 법률문헌을 작성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볼 수 있다.²²⁾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본다면 합리적, 통일적 인용 규칙의 마련은 법률문헌 인용을 배우는 학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교육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²³⁾

III. 해외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 코먼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영국 -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 표준(OSCOLA)

가. 개관

옥스퍼드 대학교의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 표준(The Oxford University Standard for Citation of Legal Authorities)은 피터 버크스(Peter Birks) 교수에 의해 2000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제4판이 발간되었다.²⁴⁾ 발간된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의 사용만을 염두에 두었으나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 외에도 영국 전역의 로스쿨과 해외의 로스쿨에서도 참조·활용되고 있다.²⁵⁾

21) Donahue, *supra*.

22) UC Davis Mabie Law Library, *Introduction to Legal Citation*, <https://libguides.law.ucdavis.edu/citation> (last visited Aug. 25, 2021).

23) 김정오, 전개논문, 73-74면.

24) University of Oxford(Faculty of Law), *Oxford University Standard for the Citation of Legal Authorities(OSCOLA)* i (4th ed. 2012).

25) *Id.*

나. 내용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 표준은 50여 편의 분량으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자>

-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를 사용한다. 이탤릭체는 사건명, 단행본명 등에만 활용한다. 마침표는 가능한 최소한의 사용을 지향하며, 문장이나 각주의 끝에만 사용하고 약어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 {법령명} {연도} (필요한 경우 {관할}), {인용 조항}.
- 예1: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s 7(1).
- 예2: Water Resources Act 1991 (UK), s 4..

<판례 #1 [공식 인용(neutral citation)이 존재하는 경우]>

- {사건명} [{연도}] {법원} {사건번호}, [판례집이 매년 1회 이상 발행되는 경우 {연도}] (판례집이 연도와 관계없이 발행되는 경우 {연도}) {권호 정보}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 부분}].

<판례 #2 [공식 인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건명} [판례집이 매년 1회 이상 발행되는 경우 {연도}] (판례집이 연도와 관계없이 발행되는 경우 {연도}) {권호 정보} {판례집} {시작 면수}, ({법원}) {인용 부분}.
- 예1: *Corr v IBC Vehicles Ltd* [2008] UKHL 13, [2008] 1 AC 884 [42].
- 예2: *Barrett v Enfield LBC* (2001) 49 BMLR 1 (HL) 3.
- 예3: *Page v Smith* [1996] AC 155 (HL).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여러 권일 경우 {권호 정보} ({추가정보}, {판차}, {연도} {출판사}) {인용된 부분 혹은 면}.
- 예1: Gareth Jones, *Goff and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1st supp, 7th edn, Sweet & Maxwell 2009) 317.
- 예2: Christian von Bar, *The Common European Law of Torts*, vol 2 (CH Beck 2000) para 76.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의 권호가 있는 경우 {연도}) 또는 [학술지의 권호가 없는 경우 {연도}]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 예1: Alison L Young, 'In Defence of Due Deference' (2009) 72 MLR 554, 557.
- 예2: Paul Craig, 'Theory, "Pure Theory" and Values in Public Law' [2005] PL 440, 442.

26)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General Notes), Chapter 2(Primary Sources), Chapter 3(Secondary Sources), Chapter 4(Appendix) (*Id.* at i-iv).

<인터넷 자료>

- {저자}, ‘{자료 제목}’ ({홈페이지 제목}, {연월일}) <{URL}> {접근 연월일}.
- 예: Sarah Cole, ‘Virtual Friend Fires Employee’ (*Naked Law*, 1 May 2009)
 <<http://www.nakedlaw.com/2009/05/index.html>> accessed 19 November 2009.

<외국자료>

-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와 유사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미국

가. 블루북(The Bluebook)

(1) 개관

현재 미국에서 주도적인 인용방법은 블루북(the Bluebook)에 의한 인용방법이다.²⁷⁾ 블루북에 의한 인용이 주도적인 인용방법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기에 블루북 외에 참고할 만한 인용방법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²⁸⁾ 블루북 이전에도 1882년에 초판이 발간된 변호사를 위한 법률 서적과 인용 참고 매뉴얼(The Lawyer’s Reference Manual of Law Books and Citations)과 같은 법률 문헌 인용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였으나²⁹⁾ 블루북은 출간 이후 곧 학계와 실무계에서 크게 환영받으면서 단시간에 주도적인 인용방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³⁰⁾ 1926년 미국에서 최초로 출판³¹⁾된 이후 블루북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제21판이 2020년에 출간되었다.

(2) 내용

현재 블루북은 총 365면의 분량이며 4개의 장(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그 대표

27) Georgetown Law Library, *Bluebook Guide*, <https://guides.ll.georgetown.edu/bluebook/about> (last visited 25 Aug. 2021).

28) Carol Bast & Susan W. Harrell, *Legal Citation for the 21st Century*, 19 J. Paralegal Educ. & Prac. 15, 25 (2003).

29) Charlotte Stichter, *Rethinking Legal Citation: A Bibliographic Essay*, 44 Int’l J. Legal Info. 274, 276 (2016).

30) *Id.* at 275.

31) 당시에는 블루북이란 이름이 아니라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Id.* at 275-276).

32)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Blueprints)에서는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활자>

-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와 이탤릭체만을 사용한다. 다만 이탤릭체의 경우 밑줄(underlining)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단행본이나 논문이 실린 간행물명 등은 작은 크기의 대문자(small capitals)로 표기할 수 있다.

<법령>

- {필요한 경우 법령명}, {편(title)의 번호} {U.S.C.} {§ 인용된 조문} ({연도}) 또는 (출처가 비공식인 경우 {출판사 연도}).
- 예1: 17 U.S.C. § 107 (2012).
- 예2: Copyright Act of 1976, 17 U.S.C. § 107 (2012).
- 예3: 17 U.S.C.A. § 107 (West 2015).

<판례>

- {사건명} 또는 {사건명}, {권호 정보}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법원} {연도}), {상급심 판결에서의 정보}, {상급심 판결의 인용}.
- 예1: *Ward v. Reddy*, 727 F. Supp. 1407, 1412 (D. Mass. 1990).
- 예2: *Haber v. Yee*, 727 F. Supp. 1407, 1412 (D. Mass. 1990), *aff'd*, 925 F.2d 314 (1st Cir. 1991).
- 예3: *Roe v. Wade*, 410 U.S. 113, 164 (1973).

<단행본>

- {여러 권으로 구성된 단행본을 경우 (권호)} {저자}, {단행본명} 또는 {단행본명}, {인용된 부분 혹은 면} ({판차} {연도}).
- 예1: HAROLD W. FUSON, JR., TELLING IT ALL: A LEGAL GUIDE TO THE EXERCISE OF FREE SPEECH 57-58 (1995).
- 예2: 4 CHARLES ALAN WRIGHT & ARTHUR R. MILLER,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1006 (2d ed. 1987).

<논문>

- {저자}, {논문명} 또는 {논문명}, {권호}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연도}).
- 예1: Elizabeth F. Emens, *Integrating Accommodation*, 156 U. PA. L. REV. 839, 894 (2008).
- 예2: Bradford R. Clark, Note, *Judicial Review of Congressional Section Five Action: The Fallacy of Reverse Incorporation*, 84 COLUM. L. REV. 1969, 1986 (1984).

으며, 제2장은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21개의 규칙(rules)으로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인용의 대상과 그 약어(abbreviations)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16개의 표(tabl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4장은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Harvard Law Review, Columbia Law Review & Yale Law Review,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 ff. (21st ed. 2020)].

<인터넷 자료>

- {저자}, {제목}, {홈페이지 제목} ({연월일시}), {URL}.
- 예: Eric Posner, *More on Section 7 of the Torture Convention*, VOLOKH CONSPIRACY (Jan. 29, 2009, 10:04 AM), <http://www.volokh.com/posts/1233241458.shtml>.

<외국자료>

- 외국자료의 경우 블루북의 Table 2에서 44개국의 인용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https://www.legalbluebook.com/bluebook/v21/tables/t2-foreign-jurisdictions>),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블루북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칙을 유추하여 활용한다.

(3) 블루북에 대한 비판

법률문헌 인용에서 블루북이 가장 많이 활용된 만큼 블루북에 대한 비판적 의견 또한 상당 수 제기되었다. 블루북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는데, ① 법률문헌의 인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나치게 그 양이 비대해져 (특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³³⁾ ② 블루북이 개정될 때마다 인용 규칙이 수정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 ③ 양이 비대해지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인용 규칙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점³⁴⁾ 등을 들 수 있다.³⁵⁾

나. ALWD 인용 매뉴얼(The ALWD Citation Manual)

(1) 개관

ALWD 인용 매뉴얼은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ALWD)³⁶⁾와 다비 디커슨(Darby Dickerson)에 의해 만들어졌으며,³⁷⁾ 2000년에 그 초판이 출간된 이후 현재 2021년에 제7판이 출간되었다.³⁸⁾ ALWD 인용 매뉴얼은 그간 블루북에 대하여 지적

33) Richard A. Posner, *Goodbye to the Bluebook*, 53 U. Chi. L. Rev. 1343, 1344 (1986).

34) Melissa H. Weresh, *The ALWD Citation Manual: A Truly Uniform System of Citation*, 6 Legal Writing: J. Legal Writing Inst. 257, 260-261.

35) 다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블루북을 옹호하는 견해 또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Susie Salmon, *Shedding the Uniform: Beyond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to a More Efficient Fit*, 99 Marq. L. Rev. 763, 796 ff. (2016).

36)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장작성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비영리 단체이며, 시카고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 *About*, <https://www.alwd.org/about/> (last visited Aug. 25, 2021)]. 'ALWD'의 번역에 대해서는 '법률문헌작성지도자협회'라고 번역한 문헌[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변지영),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2015, 46면]이 존재하나, 본 발표문에서는 원어 그대로 이를 표기하기로 한다.

37) Cordle, *supra* at 573.

되던 사항인 ① 사용상의 불편,³⁹⁾ ② 통일성의 부족,⁴⁰⁾ 법률논총(law review)에 수록된 논문 인용시에 다른 활자체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⁴¹⁾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간명한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⁴²⁾ 또한 블루북의 경우 법률논총의 편집자를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ALWD 인용 매뉴얼의 경우 실무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⁴³⁾

ALWD 인용 매뉴얼과 앞의 블루북 사이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나 블루북 제21판의 출간 이후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이다.⁴⁴⁾

(2) 내용

ALWD 인용 매뉴얼은 630여 면의 분량으로 총 6개의 장(part)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⁵⁾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자>

- 작은 크기의 대문자(small capitals)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와 이탤릭체만을 사용한다. 다만 이탤릭체의 경우 밑줄(underlining)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

- {법령명}, {편(title)의 번호} {U.S.C.} {§ 인용된 조문} ({연도}) 또는 (출처가 비공식인 경우 {출판사 연도}).
- 예: 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 223 (2000).

<판례>

- {사건명}, {권호 정보}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법원} {연도}), {상급심 판결에서의 정보}, {상급심 판결의 인용}.

38) Carolyn V. Williams, *ALWD Guide to Legal Citation* xxxi-xxxii (7th ed. 2021).

39) James D. Gordon III, *Oh No! A New Bluebook!*, 90 Mich. L. Rev. 1698 (1992).

40) *Id.*

41) Darby Dickerson, *An Un-Uniform System of Citation: Surviving With the New Bluebook (Including Compendia of State and Federal Court Rules Concerning Citation Form)*, 26 Stetson L. Rev. 53, 95-96 (1996).

42) Cordle, *supra* at 575-576.

43) Stacey L Gordon, *A Better Tradition: Why Law Reviews Should Adopt a New Citation Format*, 68 Mont. L. Rev. 175, 180 (2007); Cordle, *supra* at 578.

44) ALWD, *Guide to Legal Citation - FAQs*, <https://www.alwd.org/guide-faqs> (last visited Aug. 25, 2021).

45)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1(Citation Basics), Part 2(Citing Specific Sources), Part 3(Online Sources), Part 4(Incorporating Citations into Documents), Part 5(Quotations), Part 6(Appendices) (Williams, *supra* at xlvii-xlvii).

– 예1: *United States v. Roviato*, 229 F.2d 812, 815 (7th Cir. 1956), rev'd, 353 U.S. 53 (1957).

– 예2: *Singh v. Ashcroft*, 393 F.3d 903, 905 (9th Cir. 2004).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또는 {단행본명}, {여러 권으로 구성된 단행본을 경우 (권호)}, {인용된 부분 혹은 면} ({판자}, {출판사} {연도}).

– 예: Charles Allen Wright, Arthur R. Muller & Mary Kay Kane,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vol. 6A, § 1497, 70–79 (2d ed., West 1990).

<논문>

– {저자}, {(학생이 저자일 경우 Note나 Comment 등 대신) Student Author} {논문명} 또는 {논문명}, {권호}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연도}).

– 예1: Prabhash Ranjan & Deepak Raju, *The Enigma of Enforceability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wards in India*, 6 AsJcL [ii], 19 (2011).

– 예2: Tera Buns Koch, Student Author, *Betting on Brownfields - Does Florida's Brownfields Redevelopment Act Transform Liability into Opportunity?*, 28 Stetson L. Rev. 171, 175 (1998).

<인터넷 자료>

– {저자}, {제목}, {URL} (last visited 또는 accessed {연월일시}).

– 예: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Statistics,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s/resources/statistics/html (last visited or accessd Nov. 20, 2020).

<외국자료>

–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와 유사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The Maroonbook)

(1) 개관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The University of Chicago Manual of Legal Citation, the Maroonbook)은 보다 간명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마련하고 법률문헌을 작성하는 저자에게 다소간 인용방법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⁴⁶⁾ 1986년에 그 초판이 발간된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은 여러 번에 걸친 개정을 거쳐 2019년에 가장 최근의 개정이 이루어졌다.⁴⁷⁾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은 ① 독자로 하여

46)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The Maroonbook*, <https://lawreview.uchicago.edu/maroonbook/> (last visited Aug. 25, 2021); Weresh, *supra* at 780.

금 인용 그 자체만으로 인용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sufficiency), ②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가능한 복잡한 표현을 지양하였으며(clarity), ③ 모든 법률문헌 내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문헌 내에서의 통일성을 지향하고(consistency), ④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인용 내에 담는 것(simplicity)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⁴⁸⁾

(2) 내용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은 총 90여 면의 분량으로, 인용의 규칙을 정하고 있는 Rule 1에서 Rule 4.15까지의 내용과 그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자(typeface)>

-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를 사용하고 밑줄이나 이탤릭, 진한 활자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례의 사건명, 논문명, 도서명,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어 단어, 강조를 위해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법령>

- {법령명},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령명}, {권호} {법전} {인용 조항} ({(비공식적일 경우) 출판사} {연도}). → 다만 법령명은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 예1: National Labor Relations Act(NLRA), 29 USC § 151 (1982).
- 예2: Subdivided Lands Act, Cal Bus & Prof Code § 11000 (West 1964).

<판례>

- {사건명}, {권호}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법원} {연도}).
- 예: *Hively v Ivy Tech Community College of Indiana*, 853 F3d 339, 343 (7th Cir 2017).

<단행본>

- {저자}, {권호} {단행본명}, {인용된 부분 혹은 면} ({출판사} {판차} {연도}).
- 예: James J. White and Robert S. Summers, *Handbook of the Law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 14-6 at 563 (West 2d ed 1980).

<논문>

- {저자}, {논문명}, {권호}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연도}).
- 예: Jennifer Nou, *Intra-Agency Coordination*, 129 Harv L Rev 421, 459 (2015).

47) Posner, *supra* at 1343;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supra* at i.

48)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supra*.

49)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supra* at i.

<인터넷 자료>

- {저자}, {제목} *{인용면수} ({출판사}, {연월일}), archived at {URL}.
- 예: See Adrian Vermeule, *Security and Liberty: Critiques of the Tradeoff Thesis* *4-5 (Harvard Public Law Working Paper No 11-19, July 18, 2011), archived at <https://perma.cc/7CKH-PQKM>.

<외국자료>

- 외국자료의 경우 이 매뉴얼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고, 불분명하지 않게 인용되어야 한다.

(3) 평가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은 미국에서 개발·활용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중에서는 옥스퍼드 법률문헌 인용 표준(OSCOLA)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⁵⁰⁾ 다만 시카고 대학 법률문헌 인용 매뉴얼은 블루북을 대신하여 인용 매뉴얼의 대안이 되는 데는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블루북과 비교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였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¹⁾

3. 캐나다 -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

가. 개관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 the Cite Guide, the McGill Guide)는 캐나다 내에서의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법률문헌 인용 방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캐나다 맥길 대학교 법률논총(McGill Law Journal)의 편집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⁵²⁾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1986년에 최초로 출간되었으며, 4년마다 개정을 거쳐 2018. 6. 아홉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⁵³⁾ 현재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캐나다 내의 다수의 법원

50) John Kleefeld, *OSCOLA, the Oxford Standard for Citation of Legal Authorities*, 1 Dal. L.J. 269, 274 (2013).

51) Weresh, *supra* at 781-782; Bast & Harrell, *supra* at 26.

52) McGill Law Journal, *The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 <https://lawjournal.mcgill.ca/cite-guide/> (last visited Aug. 25, 2021); Queen's University Library, *Legal Citation with the 9th edition of the McGill Guide*, <https://guides.library.queensu.ca/legalcitation-mcgill-9th/> (last visited Aug. 25, 2021).

과 법률출판사, 법률논총 등에 의해 채택, 활용되고 있으며 실무가의 대부분과 로스쿨 교원 및 학생에게서도 가장 많이 채택, 활용되고 있다.⁵⁴⁾

나. 내용

캐나다 통일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⁵⁾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자>

-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를 사용한다. 이탤릭체는 법령명이나 사건명, 단행본명 등에만 활용한다. 마침표는 문장이나 각주의 끝에만 사용하고 약어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 {법령명}, {법령집 권호 정보(관할 정보와 연도 포함)}, {장(chapter) 번호}, {조문(필요한 경우)}
- 예1: *Fewer Politicians Act*, SO 1996, c 28, s 3.
- 예2: *Mining Act*, RSO 1990, c M. 14.

<판례 #1[공식 인용(neutral citation)이 존재하는 경우]>

- {사건명}, {공식 인용} at {인용 부분}, {(필요한 경우) 법관의 이름}
- 예: *Radonna Investments Ltd v Rubin*, 2012 ONCA 321 at para 2, LaForme JA.

<판례 #2(공식 인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사건명}, [{연도}] {권호} {판례집} {시작 면수} at {인용 부분}, 필요한 경우 {다른 판례집의 권호} {다른 판례집} {시작 면수}.
- {사건명} 판례집에 연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연도}), {권호} {판례집} {시작 면수} at 인용 부분, 필요한 경우 {다른 판례집의 권호} {다른 판례집} {시작 면수} (필요한 경우 {법원명}).
- 예1: *Hopp v Lepp*, [1980] 2 SCR 192 at 201, 112 DLR (3d) 67.
- 예2: *Fucella v Ricker* (1982), 35 OR (2d) 423 at 426, [1982] OJ No 3144 (QL) (H Ct J).

53) McGill Law Journal, *supra*.

54) *Id.*

55)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1(General Rules), Part 2(Legislation), Part 3(Jurisprudence), Part 4(Governmental Documents), Part 5(International Materials), Part 6(Secondary Sources and Other Materials), Part 7(Foreign Sources). 특히 제7장에서는 영국(United Kingdom)과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문헌 인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McGill Law Journal, *Canadian Guide to Uniform Legal Citation* xv-xxiv (2018)].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판차}, ({출판 소재지}: {출판사}, {출판연도}) at {인용된 부분 혹은 면}.
- 예1: Jamie Chai Yun Liew & Donald Galloway, *Immigration Law*, 2nd ed (Toronto: Irwin Law, 2015) at 73.
- 예2: RJ Dellisle, *Evidence: Principles and Problems* (Toronto: Carswell, 1984) at 129.

<논문>

- {저자}, “{논문명}” ({연도}) {권호} {학술지} {시작 면수} at {인용된 면수}.
- 예: Hoi L Kong, “Deliber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s” (2015) 41:1 Queen’s LJ 105 at 107.

<인터넷 자료>

- 자료의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인용방법으로 인용, {online:} {홈페이지 제목} <{URL}> [존재하는 경우 {아카이브된 URL}]
- 예: Polly Donda-Kaplan & Natasha Bakht, *The Application of Religious Law in Family Law Arbitration Across Canada* (April 2006), online: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 <<http://www.leaf.ca/wp-content/uploads/2016/03/2006-04-Submission-The-Application-Of-Religious-Law-In-Family-Law-Arbitration-Across-Canada.pdf>> [<https://perma.cc/S4JV-4PHH>].

<외국자료>

-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와 유사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4. 오스트레일리아 -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AGLC)

가. 개관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AGLC)는 1998년에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2002년과 2010년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18년에 네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⁵⁶⁾

56)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Association, *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 ix (4th ed. 2018);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aw School, *About the Australian Guide to Legal Citation(AGLC)*, <https://law.unimelb.edu.au/mulr/aglc/about/> (last visited Aug. 25, 2021).

나.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총 335면의 분량으로 5개의 장(part)과 그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⁷⁾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자 및 일반규칙>

- 활자는 일반적인 활자를 사용한다. 이탤릭체는 법령명이나 그 연도, 사건명, 단행본명, 학술지명 등에만 활용한다. 마침표는 문장이나 각주의 끝에만 사용하고 약어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 {법령명} {연도} ({관할}) {인용 조항}
- 예1: *Crimes Act* 1958 (Vic) s 3.
- 예2: *Gambling Regulation Act 2003* (Vic) s 3.2.1.

<판례>

- {사건명} ({연도}) 또는 [{연도}] {권호}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 면수}.
- 예1: *R v Tang* (2008) 237 CLR 1, 7.
- 예2: *Bakker v Stewart* [1980] VR 17, 22.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사}, {판차}, {연도}) {인용된 부분 혹은 면}.
- 예: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7th ed, 2014) 578.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의 권호가 있는 경우 {연도}) 또는 [학술지의 권호가 없는 경우 {연도}]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된 면수}.
- 예1: Harold Luntz, ‘A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Law of Torts’ (2005) 27(3) *Sydney Law Review* 393, 400.
- 예2: Lord Woolf, ‘Droit Public: English Style’ [1995] (Spring) *Public Law* 57, 60.

<인터넷 자료>

- {저자}, {‘자료 제목’} {홈페이지 제목} ({자료 유형}, {연월일}) {인용 부분} <{URL}>.
- 예: Martin Clark, ‘Koani v The Queen’, *Opinions on High* (Blog Post, 18 October 2017) <<http://blogs.unimelb.edu.au/opinionshigh/2017/10/18/koani-case-page/>>.

57)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I(General Rules), Part II(Domestic Sources), Part III(Secondary Sources), Part IV(International Materials), Part V(Foreign Domestic Sources). 특히 제5장에서는 캐나다와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United Kingdom), 미국의 법률문헌 인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Association, *supra* at xiii-xxiii).

<외국자료>

-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와 유사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5. 뉴질랜드 -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

가. 개관

뉴질랜드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New Zealand Law Style Guide)는 뉴질랜드 법률문화재단(Law Foundation)에서 발간되었으며, 2009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11년의 개정을 거쳐 2018년에 세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⁵⁸⁾

나. 내용

뉴질랜드 법률문헌 인용 가이드는 총 10개의 장(chapter)과 그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⁹⁾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자 및 일반규칙>

- 활자는 보통의 활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는 문법적으로(grammatically)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약어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탤릭체는 ① 판례에서의 당사자 이름이나 ② 신문의 이름, ③ 도서의 제목, ④ 정부기관의 보고서 제목과 같이 인용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대문자의 사용도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사용을 지양한다.

<법령>

- {법령명} {연도} (뉴질랜드 법령이 아닌 경우 {관할}), {인용 조항}.
- 예1: Gaming Duties Act 1971, s 9.

58) The Law Foundation of New Zealand, *New Zealand Law Style Guide* i-iii (2018), <http://www.lawfoundation.org.nz/style-guide/index.html/> (last visited Aug. 25, 2021).

59)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General Rules: Main Text), Chapter 2(General Rules: Footnotes and the Citation of Sources), Chapter 3(Cases), Chapter 4(Legislation), Chapter 5(Other Official Sources), Chapter 6(Secondary Materials), Chapter 7(Other Sources), Chapter 8(Cases from Specific Jurisdictions), Chapter 9(Legislation from Specific Jurisdictions), Chapter 10(International Materials). 특히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미국의 판례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United Kingdom), 미국의 법령 인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Alice Coppard et al., *New Zealand Law Style Guide* (3d ed. 2018), https://www.lawfoundation.org.nz/style-guide2019/table_of_contents.html/ (last visited Aug. 25, 2021)].

- 예2: Counter-Terrorism Act 2008 (UK), s 92.

<판례>

- {사건명} ({만약 존재한다면} 공식 인용), [{연도}] {권호} {판례집} {시작 면수} (공식 인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명}) at [{인용 절} 혹은 인용 면수].
- 예1: *Z v Dental Companies Assessment Committee* [2008] NZSC 55, [2009] 1 NZLR 1 at [26].
- 예2: *Canterbury Frozen Meat Co Ltd v Waitaki Farmers' Freezing Co Ltd* [1972] NZLR 806 (SC) at 815.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판차}, {출판사}, {출판 소재지}, {연도}) {권호} at [{인용된 부분}] 혹은 {인용된 면}.
- 예1: Ross Carter *Burrows and Carter Statute Law in New Zealand* (5th ed, LexisNexis, Wellington, 2015) at 311.
- 예2: Roger Fenton *Garrow and Fenton's Law of Personal Property in New Zealand* (7th ed, LexisNexis, Wellington, 2010) vol 2 at [2.2.20].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의 권호가 있는 경우 {연도}) 또는 [학술지의 권호가 없는 경우 {연도}] {권호} {학술지} {시작 면수} at {인용된 면수}.
- 예1: Peter Watts "Birks' Unjust Enrichment" (2005) 121 LQR 163 at 165.
- 예2: Jessica Palmer "Theories of the Trust and What They Might Mean for Beneficiary Rights to Information" [2010] NZ L Rev 541 at 543.

<인터넷 자료>

- {저자}, "{자료 제목}" ({연월일}) {홈페이지 제목} <{URL}> at {인용 부분}.
- 예1: Dean Knight "Parliament and the Bill of Rights - a blasé attitude?" (6 April 2009) LAWS179 Elephants and the Law <<http://www.laws179.co.nz/>>.
- 예2: Federico Varese "The Secret History of Japanese Cinema: The Yakuza Movies" (14 May 2006)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www.ssrn.com>> at 14.

<외국자료>

-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가이드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와 유사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IV. 국내의 법률문헌 인용 표준 마련 사례

1. 한국법학교수회 -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

가. 개관

한국법학교수회의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은 2000년 최초로 출간되었다.⁶⁰⁾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은 그간 통일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이 존재하였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⁶¹⁾

나. 내용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은 120여 편의 분량으로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논문의 구성 및 그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법률 관련 문헌의 인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은 국제기구의 문헌에 대한 인용이나 한국의 법학 관련 문헌을 영어로 표시할 경우의 표기요령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판례>

- 판결을 선고한 법원, 판결선고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의 종류, 판례의 출처순으로 표시한다.
- 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판결 (공1996상, 1708).

<법령>

- 처음 인용시에는 법령의 공식명칭을 표시하며, 조-항-호-목 순으로 표시한다. 법령의 폐지나 개정 등 법령과 관계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법령명 뒤에 괄호를 열고 해당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예1: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 예2: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60)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2002. 6. 19., http://www.klpa.org/bbs/board.php?bo_table=klpa4&wr_id=1476 (2021. 8. 25. 최종방문)에서 원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61) 한국법학교수회,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 2000, i면.

<단행본>

- 저자, 제목, 인용된 면(절이나 항), 출판연도 등은 반드시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자나 역자, 판수, 출판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예1: 송상현, 민사소송법, 302-303면 (신정2판, 1999).
- 예2: 윤용섭 등, 민법주해 「J」, 182면 (곽윤직 등 편, 1992).

<정기간행물>

- 저자, 논문이나 글의 제목, 정기간행물의 명칭과 통권호수, 인용된 면, 간행연월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문의 제목은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1: 박성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계간 저작권, 1995. 겨울, 16면.
- 예2: 윤진수,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1996. 4., 133면.

<인터넷 자료>

- 저자의 이름, 인용된 자료의 제목, (최종 갱신일) <URL> 또는 저자의 이름, 인용된 자료의 제목, (최종 방문일) <URL>의 순으로 표기한다.
- 예: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2000. 5. 5. 방문) <<http://www.kafil.or.kr/seminar/d-3.htm>>.

[미국]

<판례>

- 사건명,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 법원과 관할을 표시하는 삽입구, 판결의 연도 및 날짜, (존재할 경우) 사건의 후속 경과로 표시한다.
- 예1: Meritor Sav. Bank v. Vinson, 477 U.S. 57, 60 (1986).
- 예2: United States v. McDonald, 531 F.2d 196, 199-200 (4th Cir. 1976P rev'd 435 U.S. 850 (1978)).

<법령>

- 법률의 공식명칭을 포함하여 인용하거나 공식명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인용할 수 있다. 가능한 면 공식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예1: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42 U.S.C. §§ 9601-9675 (1994).
- 예2: 28 U.S.C. § 1291 (1994).

[영국]

<판례>

- 사건명, [연도] 혹은 (연도) 권호 정보 판례집 시작 면수, 인용 면수 (법원)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 *Bonning v Dodsley* [1982] 1 W.L.R. 279, 230.

<법령>

- 법령명 연도 (장(chapter) 번호), s. 조문 번호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 Transport Act 1968 (c. 73), s. 20.

<논문>

- 저자, “논문명” (연도) 권호정보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 면수 혹은 저자, “논문명” [연도] 학술지 시작 면수, 인용 면수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1: R. Stevens, “The Final Appeal” (1964) 80 L.Q.R. 343, 349.
- 예2: M. Clarke, “Insurance Contracts and Non-disclosure” [1993] L.M.C.L.Q. 297, 300.

[독일]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판차 출판연도, 인용 부분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 K. Schmidt, Gesellschaftsrecht, 3. Aufl. 1997, S. 123.

<논문>

- 저자, 제목, 학술지명과 연도, 시작 면수, 인용 면수 혹은 저자, 학술지명과 연도, 시작 면수, 인용 면수로 표시한다.
- 예: Schmidt, BB 1999, 223, 224.

<법령>

- 해당 법률이 공고된 연방관보(Bundesgesetzblatt, BGBl)의 수록 면을 표시한다.
- 예: BGBl I 1999, S. 1111.

<판례>

- 법원의 명칭과 출전을 기재하거나 공식적인 표시를 모두 기재하고 출전을 기재하는 식으로 표시한다.
- 예1: BGH NJW 1999, 123.
- 예2: BGH, Urt. v. 30. 9. 1999 - IX ZR 139/98, GmbHR 1999, 1196.

[프랑스]

<판례>

- 법원, 선고일, 출처의 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예1: Cass. Civ. 2, 19 déc. 1995, Bull, p. 327.
- 예2: Soc. 18 oct. 1961, Bull. civ. IV, n° 867.

<법령>

- 법령의 종류, 법령번호, 서명일, 사항표시로 표시한다.
- 예: Loi n° 86-18 du 6 janvier 1986 relative aux sociétés d'attribution d'immeubles en jouissance à temps partagé.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사, 판차, 출판 소재지, 출판연도, 인용 면수의 순서로 표시한다.

- 예: G. Vedel, *Droit administratif*, P.U.F. Collection Thémis, 4^e éd., Paris, 1968, p. 302.

[일본]

<판례>

- 재판소, 연월일, 등재된 판례집의 면수로 표시한다.
- 예: 最高裁平成0年0月00日民集(또는 刑集)00卷0號00頁.

<법령>

- 법령명 조 항 호 목의 순으로 표시한다.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 소재지, 판차, 출판연도) 인용 면수 혹은 저자 『단행본명』 인용면수 (출판 소재지, 판차, 출판연도)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1: 四宮和夫 『民法總則』 一二五頁 (弘文堂, 第四版, 昭六一).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정보 인용 면수(발행연도) 혹은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정보 (발행연도) 인용 면수로 표시한다.
- 예1: 横田喜三郎 「條約の違憲審査權—砂川判決を中心として」 國家73卷7・8號1—頁以下 (1960).
- 예2: 末弘嚴太郎 「物權的請求權理論の再檢討」 法時11卷5號 (昭1939) 1頁以下.

2. 사법정책연구원 -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가. 개관

사법정책연구원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2015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2017년에 증보판이 발간되었다.⁶²⁾ 본 표준안은 ① 대한민국에서의 바람직한 법 연구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②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③ 인용의 바람직한 질서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³⁾

나. 내용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총 170여면의 분량으로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62)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변지영), 전게서, 2017, viii면.

63) 상게서, 3면.

할 만한 점으로는 국내의 다른 인용방법 표준안과는 달리 해외의 법률문헌 인용과 관련하여 약 37개국의 사례를 추가하여 기존에 특정 국가만으로 제한되던 한계를 넘어 보다 풍부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⁶⁴⁾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판례>

- 법원명 선고일자 사건번호 재판종류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 예2: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법령>

- 법령의 명칭 (필요한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경과 등에 관한 사항) 조-항-호-목 순으로 표시한다.
- 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판차), 출판사(출판연도), 인용 면수(또는 인용 지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인용된 면수는 숫자로만 표시하고 별도로 “면” 등의 단어를 붙이지 아니한다.
- 예1: 이창희, 세법강의(제11판), 박영사(2013), 25.
- 예2: 이시윤, 민사소송법(보정신판), 박영사(1995), 232.
- 외국 단행본의 경우에도 해당 언어로 국내 단행본에서의 원칙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출판사 앞에 출판 소재지를 쓰고 ‘:’ 표시를 한다.
- 예1: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4th ed.), Can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5), 72-73.
- 예2: Gerrit Manssen,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Hoheitsakt-Verfass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fragen, Tübingen: Mohr Siebeck(1994), 35.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정보(연월일), 인용 면수로 표시한다.
- 예1: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 의무”, 인권과 정의 제236호 (1996. 4.), 133-139.
- 예2: 이창희,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 3.), 237.
- 외국 논문의 경우 그 나라에서 실질적인 표준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표준을 잘 알 수 없는 경우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본 표준안의 방식에 맞추어 표시한다.
- 예1: James W. Paulsen, “An Uninformed System of Citation”, 105 Harv. L. Rev. 1780, 1782 (1992).
- 예2: N. W. Barber, “Laws and Constitutional Conventions”, (2009) 125 LQR 294, 296.
- 예3: Klein,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VBl. 1994, 489, 492.

64) 상계서, 36면 이하.

- 예4: F. Zapata, “Les compétences juridictionnelles en matière de protection sociale des fonctionnaires et des agents publics”, RFDA 1998, 333.

<인터넷 자료>

- 저자, “웹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의 제목”, 홈페이지 제목, URL (자료생산일자 또는 최종확인일자).
- 예1: Terry Carter, “SCOTUS limits president’s power in making temporary appointments”, ABA Journal, http://www.abajournal.com/news/article/scotus_nlr_sw_general_temporary_appointments/ (2017. 3. 21. 확인).
- 예2: 김두열, “사법정책과 경제성장”,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2012), 74,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aaec8f6224e1769b8a46ed51677d939.pdf (2014. 8. 25. 확인).

<외국자료>

- 해외 법령이나 판례와 같은 외국자료는 해당 국가의 실질적 표준 방안으로 직접 인용하되, 해당 국가의 인용 방식을 잘 알수 없는 경우에는 본 표준안의 기준에 근거하여 원어로 인용한다.

3. 국회도서관 -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가. 개관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는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와 국회도서관이 공동으로 2020년에 발간하였다.⁶⁵⁾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는 ① 다양한 유형의 법률정보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② 법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③ 법학 분야 국내외 자료의 리서치 방법과 주요 정보원에 대한 실무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⁶⁶⁾

나. 내용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는 총 280면의 분량으로 4개의 장(chapter)과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⁷⁾ 제1장은 법령 정보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국내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법령 정보 조사와 인용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⁶⁸⁾ 제2장의 경우 판례 정보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1장과 같은 대상 국가의 판례 정보 조사와 그 인용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⁶⁹⁾ 제3장은 2차 문헌 조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⁷⁰⁾ 제4

65)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국회도서관,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2020, 2면.

66) 상계서.

67) 상계서, 8면.

68) 상계서, 8-9면.

장은 특별기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국가별 온라인 정보원 리스트에 대해 다루고 있다.⁷¹⁾ 그 대표적인 내용을 인용방법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인용]

<국내>

- 법령명을 기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법, 조, 항, 호, 목을 나열하며, 폐지나 개정, 경과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령명 뒤에 괄호를 넣어 설명한다.
-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미국>

- 연방법률의 경우 해당 법률을 표시한 후 그것에 조문 표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인용한다.
- 예: 42 U.S.C. § 1390 (2006).

<독일>

- 의회자료의 경우 고유의 표기방식을 따라 인용하며, 연방법률의 경우 연방법률관보의 약어와 권호, 연도, 면표시기호, 수록면수로 인용한다.
- 예1: BT-Drs. 14/6378, S. 61.
- 예2: BGBl. I 2014, S. 906.

<일본>

- 제명에 법령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食品衛生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三十三号) 第一条.

<프랑스>

- 법령번호, 공포일자, 법률명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기해야 한다.
- 예: Loi n° 2018-1104 du 10 décembre 2018 du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8.

[판례 인용]

<국내>

- 선고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재판종류, 판례의 출처순으로 인용한다
- 예: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공1998상, 1465).

<미국>

- 사건 당사자, 판례집 권 수, 판례집 축약형태, 판례집에서 해당 사건이 게재된 첫 페이지, 인용된 페이지, 선고법원, 선고연도 순으로 인용한다.
- 예: Meritor Sav. Bank v. Vinson, 477 U.S. 57, 60 (1986).

69) 상계서, 9-10면.

70) 상계서, 10-11면.

71) 상계서, 11면.

<독일>

- 판례집과 법률저널을 구분하여 인용한다.
- 예1: BVerGE 40, 296(314).
- 예2: BVerGE 58, 300 v. 14.7.1981.
- 예3: BVerG, NVwZ 1997, 905.
- 예4: BVerGE 112, 135 = NVwZ 2001, 427.

<일본>

- 재판소명, 재판의 종류, 재판일시, 사건번호, 출전의 순으로 인용한다.
- 예: 最(三小)判 昭62.3.3. 昭59(あ)1090 刑集 第41卷 2号 15頁.

<프랑스>

- 법원, 선고일, 출처순으로 표시한다.
- 예: Cass.com. 28 juin 2016

V. 추후 고려해볼 사항

1.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의 보급·활용

현재 개발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대략 3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표준안을 학계와 실무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이라고 하여도 표준안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래도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표준안의 보완이나 새로운 표준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개발된 표준안을 널리 보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다.

2. 주기적 개정작업의 필요

현재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중 한국법학교수회의 법학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 표준규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작업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며, 사법정책연구원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은 2015년 제정 이후 2017년에 1회의 개정을 거친 상

황이다. 앞에서 본 여러 국가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경우 그 간격의 길고 짧음은 존재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개정작업을 하여 그 결과물을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문헌이나 출처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고 다른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용방법 안내

Westlaw나 HeinOnline과 같은 외국의 법률 관련 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한 문헌에 대한 표준적인 인용방법을 안내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참조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개발되었거나 향후 개발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을 웹 데이터베이스에 소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접근은 인용방법 표준안에 대한 보급과 활용도 제고의 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그림은 HeinOnline에서 문헌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위에서 살펴 보았던 여러 인용방법에 따라 해당 문헌을 어떻게 인용하면 되는지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웹 데이터베이스 업체 중 하나인 DBPIA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아래의 그림 참조), 법학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스타일인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스타일에 의한 인용방법만을 소개하고 있어 법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A 스타일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학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표준적인 인용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HeinOnline⁷²⁾과 DBPIA⁷³⁾에서의 인용방법 안내 화면 비교

DATE DOWNLOADED: Wed Aug 25 21:46:20 2021

SOURCE: Content Downloaded from [HeinOnline](#)

Citations:

Bluebook 21st ed.

Gregg D. Polsky &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96 VA. L. REV. 1295 (2010).

ALWD 6th ed.

Polsky, G. D.; Markel, D. ., Taxing punitive damages, 96(6) Va. L. Rev. 1295 (2010).

APA 7th ed.

Polsky, G. D., & Markel, D. (2010). Taxing punitive damages. Virginia Law Review, 96(6), 1295-1360.

Chicago 17th ed.

Gregg D. Polsky;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Virginia Law Review 96, no. 6 (October 2010): 1295-1360

McGill Guide 9th ed.

Gregg D Polsky &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2010) 96:6 Va L Rev 1295.

AGLC 4th ed.

Gregg D Polsky and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2010) 96(6) Virginia Law Review 1295.

MLA 8th ed.

Polsky, Gregg D., and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Virginia Law Review, vol. 96, no. 6, October 2010, p. 1295-1360. HeinOnline.

OSCOLA 4th ed.

Gregg D Polsky and Dan Markel, 'Taxing Punitive Damages' (2010) 96 Va L Rev 1295

출처	동아법학 (74), 2017.2, 43-86(44 pages)
(Source)	DONG-A LAW REVIEW (74), 2017.2, 43-86(44 pages)
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Publish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2058
APA Style	이점민 (2017).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74), 43-86

72) HeinOnline, https://heinonline.org/HOL/Page?public=true&handle=hein.journals/valr96&div=36&start_page=1295&collection=usjournals&set_as_cursor=0&men_tab=srchresults (last visited Aug. 25, 2021).

73) DBPIA 홈페이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2058> (2021. 8. 25. 최종방문).

VI. 나가며

법률문헌에서 인용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법률문헌에서 인용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법률문헌의 인용에서 표준화된, 통일된 인용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법학 커뮤니티에서 인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효율적인 법학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외에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대해 이 글에서는 코먼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코먼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인용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종래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인용방법인 블루북에 더하여 여러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도서관에서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표준안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적인, 널리 통용되는 인용방법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급 및 활용의 노력과 주기적인 개정작업을 통한 업데이트, 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용방법 안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에 관한 토론문

경북대 법전원 교수 신 영 수

1. 이번 연구성과의 의미

문헌의 인용방식은 주로 학술저작물 중심으로 선진화 및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생각됨. 그런 점에서 여러 문헌들 가운데 법률문헌의 인용 방법의 통일화를 여타 인문, 사회 혹은 자연과학 분야와 차별적으로 논할 필요성은 우선 법조문과 판례의 인용방법의 통일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리 듯함. 아울러 법학 분야 고유의 특수성을 추출하여 학술문헌의 인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노력 역시 점차 정보화, 데이터화하는 학계의 환경에서 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함.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에 관해 이제까지 제시된 어떤 조사 분석물보다 상세하고 망라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생각됨. 김정환 박사님을 통해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확보된 점을 기쁘게 생각함.

2. 법학문헌 인용방법에 관하여

문헌인용의 주된 목적들을 추려 보면, 저작물을 통해 제시되는 아이디어와 주장되는 논지의 기원이 어디이지를 제시해 주고, 그 아이디어나 주장의 변천과정 등을 확인해 주며, 필자 논지와와의 차별성 등을 밝혀주려는 등의 여러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 이 점에서 법학분야의 학술문헌에 대한 인용은 타 문헌을 인용하는 필자, 인용되는 원저자, 그리고 이 인용정보를 접는 독자의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음.

우선 필자에 대한 의미는 유사 논지의 문헌에 대한 인용은 필자 자신의 주장을 강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그 기원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논지에 대한 출처가 어디에 기원하는 지를 제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함. 이 점에서 자칫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 즉 연구윤리적 측면의 의미가 있으며, 이 같은 문헌 인용의 엄정성은 최근 들어 특히 강조되는 상황임

같은 맥락에서 인용은 인용되는 필자의 사고와 자신이 문헌을 통해 제시하는 의견과 주장이 원자자의 것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문헌의 원자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거나, 원자자로 하여금 필자가 자신의 피인용 문헌에서 밝힌 논지를 정확히 짚어서 제시한 것인지를 확인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음.

한편,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문헌별로 관련 논지들의 시간적 전개 과정, 법률 정보의 기원 출처를 밝혀 줌으로써 문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 2차, 혹은 3차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 점에서 인용은 법학의 학술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 같은 정보는 주석(NOTE, 각주, 미주 등)과 참고문헌(References)을 통해 제시되는데, 자신이 참조한 문헌들은 각주에 표기되며, 연구윤리적 의미가 중요하네 비하여, 독자가 참고해 볼 만한 문헌으로 각 논문이나 저서의 말미에 참고문헌 형식으로 제시된 인용문헌들은 정보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3. 법률 및 판례관련 정보의 인용에 관하여

문헌 인용방식은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이룬 듯함. 이를테면, 논문의 경우 저자, 제목, 발간학술지(권, 호), 발간주체, 연도, 페이지 등의 순서로 제시되어 왔고, 단행본의 경우는 좀 더 단출하게 저자, 제목, 출판사, 지역, 연도 등의 순서로 표기되어 왔음. 각국의 법학계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대체로 따라 왔으나 연도를 표기하는 순서, 페이지를 표기하는 방법(面, p. 頁)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학술지의 경우 발간주체, 단행본의 경우 발간국가 또는 지역의 표기는 구미 지역에서 중요시되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듯함. 학술지명이나 단행본명의 표기방법 이탤릭체, 꺾쇠 표기 여부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이에 비해 오히려 법률이나 판례의 인용 방법은 나라마다의 차이가 다소 커 보임. 이는 어찌보면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법률 및 하위규범의 분류 및 법전의 편재방식, 판결의 선고주체나 선고시점에 관한 표기방식에 있어서 나라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짐작됨.

그런데 이 같은 나라마다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경우 법령명, 제정 또는 시행연도, 관할, 인용 조항의 순서는 큰 차이가 없을 듯하고, 판례의 경우도 선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라는 구성요소는 동일할 것임. 이점에서 각국 법률 및 판례 번호의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여 접외적 연구에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도 있어 보임.

아울러 외국의 법률이나 판례의 경우는 축약어도 알아보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김정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 가운데, 영국의 판례로서 “*Corr v IBC Vehicles Ltd* [2008] UKHL 13, [2008] 1 AC 884 [42].; *Barrett v Enfield LBC* (2001) 49 BMLR 1 (HL) 3.” 호주의 법률로서 “*Fewer Politicians Act*, SO 1996, c 28, s 3.”에서 영국의 UKHL, BMLR, 호주의 AC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으며, 그 결과 원문을 추적해서 찾기도 어려움이 있음. 우리 학계가 향후 이런 축약어 부분을 나라별로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과제로 삼아 볼만 함.

인용시 축약어의 통일화 문제는 학술문헌들에서도 제시될 수 있는데, 국내 문헌의 재인용시 표기 방법으로서 예컨대 전게서, 상게서, 앞의 책, 위의 책 등의 통일적 표기, 외국 문헌의 *ibid*, *id.*, *op. cit.*, *supra note* 등의 국제적 수렴이나 정확한 의미 제공 노력도 우리 학계 모두가 병행하여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함.

감사합니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제고, 확산 및 지속적 관리의 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차 호

법률문헌 작성(writing)·인용(citation)방법과 관련하여, 한국법학교수회가 2000년 하나의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시안을, 2017년 증보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중 하나를 기준으로 채택한 학술지의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글은 기존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안들이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첫째, 그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품질(quality)의 문제와 둘째, 더 중요하게, 많은 학술지들이 그것들을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확산(diffusion)의 문제로 보았다. 이 글은 품질제고를 위해, ①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출발점으로 하되, ② 주요 학술지가 제시하고 있는 작성·인용방법을 두루 참고하며, ③ 주요 대학의 법학연구소장들 및 나아가 주요 학회지의 편집위원장들이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논의 및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집단지성에 의한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정립은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확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 대학 및 주요 학회의 법학학술지가 새로 제시되는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을 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20년 새로운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국 인용방법은 35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은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확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서 발간에 35개 이상의 기관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을 제시하는 Bluebook이 2021년 현재 21판까지 발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초판을 공동으로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관들을 ‘1차 공동 발간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여러 대학 및 학회가 동참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 기관들을 ‘2차 공동 발간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동 발간기관이 협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점 및 그 발간에 협력한

* 이 글은 본 세미나에서의 발표자인 정차호(주저자), 황성필 및 유걸림의 3인이 공동으로 저작한 것이다.

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문제, 확산문제 및 관리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법조계가 통일된 그리고 정치한 작성·인용방법을 널리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I. 서론

이 글은 법률문헌의 작성(writing)방법 및 인용(citation)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전략, 그 지침이 널리 활용되게 하는 전략 및 그 지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에 관하여 논한다. 법률문헌에는 주로 학자가 작성하는 논문, 단행본 외에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답변서 등, 나아가 (대)법관이 생산하는 판결서 등도 포함된다. 미래에 여러 종류의 법률문헌을 위한 작성·인용방법이 두루두루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법학논문을 위주로 작성·인용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장차, 단행본, 판결서 등 다른 법률문헌을 위해서도 작성·인용방법의 통일된 지침이 작성되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논문'의 작성·인용방법의 통일화를 먼저 도모한다. 논문의 작성·인용방법의 품질이 좋아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후 다른 법률문헌에서의 작성·인용방법의 통일화도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의 '인용'방법에 대한 통일화와 '작성'방법에 대한 통일화는 별개의 것이다. 전자의 필요성이 후자의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인용방법뿐만 아니라 작성방법도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작성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서 익히고, 적용하기 쉬운 반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Bluebook 수준으로 정치한 인용방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방법의 확산을 더 중요한 목표로 한다. 내용적으로 중국 및 일본의 인용방법보다 더 정치한 것을 지향하며, 35개 이상의 기관이 한국판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을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하,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에 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II.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1.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 인용방법

가. 내용

2000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안”(이하 ‘법학교수회 판’)을 발간하였다. 그 법학교수회 판은 기본적으로 법률문헌의 인용(quotation)방법에 대한 통일된 방식이 없었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용방법의 표준안을 제시하였고,¹⁾ 나아가 법률논문을 작성하는 방법도 자세히 제시하였다.²⁾ 법학교수회 판의 총 분량은 139면에 달한다.

나. 평가

법학교수회 판은 공청회에서 여러 법학자 및 실무가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친 후,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그것은 논문작성법과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너무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문헌 인용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논문, 단행본, 판결,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학술지 중 법학교수회 판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례(충북대학교 등)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내용의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법학교수회 판은 2000년 초판 이래 개정판이 발간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학 관련 기관에 의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의 기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1)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2000(“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학자나 법률가 또는 학생 등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방식은 물론 참고문헌을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할 것인지 통일된 방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 한국법학교수회, 위의 표준안(“이 標準은 법률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국의 여러 법률문헌을 표시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2.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인용방법

가. 내용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이하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을 발간하였다.³⁾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은 사법정책연구원 내 4명의 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법과대학 교수 10명의 감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내용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은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자주 인용되는 법률문헌 등에 관한 인용방법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분량은 총 57면에 달한다.

나.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은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법률문헌 인용 시 자주 사용되는 논문, 단행본, 판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후 그 방법의 요약내용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법학교수회 판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안이 학술지에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기준으로 채택된 사례가 (필자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

3.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 인용방법

가. 내용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년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의 증보판으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이하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발간하였다.⁴⁾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은 사법정책연구원 내 4명의 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평가를 거쳐 완성되었다. 그 증보판은 시안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

3)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 2015(“이 표준안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2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첨부 자료입니다.”), file:///C:/Users/sphwa/Downloads/%EB%B2%95%EB%A5%A0%EB%AC%B8%ED%97%8C+%EB%93%B1%EC%9D%98+%EC%9D%B8%EC%9A%A9%EB%B0%A9%EB%B2%95+%ED%91%9C%EC%A4%80%EC%95%88[%EC%8B%9C%EC%95%88]%20(1).pdf.

4)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2017, file:///C:/Users/sphwa/Downloads/2017-01-%EB%B2%95%EB%A5%A0%EB%AC%B8%ED%97%8C%EC%9D%98+%EC%9D%B8%EC%9A%A9%EB%B0%A9%EB%B2%95+%ED%91%9C%EC%A4%80%EC%95%88(%EC%A6%9D%EB%B3%B4%ED%8C%90)%20(3).pdf.

개의 국가를 추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의 총 분량은 175면에 달한다.

나.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은 법률문헌 인용 시 자주 사용되는 논문, 단행본, 판결 등의 인용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부연설명을 통해 독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시안을 넘어 증보판이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추가 개정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그것은 법률문헌 인용방법만 다루고 논문작성법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그 증보판은 56면 분량의 사법정책연구원 시안에 해외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개의 국가를 추가하였는데 외국의 인용방법에 대한 소개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그 증보판은 시안의 내용을 조금 더 정치하게 보완 및 수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깊게 파는 작업보다 더 넓게 파는 작업에 중점을 둔 것이다. 게다가,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설명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축약형태 및 영문명에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⁵⁾ 무엇보다도,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이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보판이 여러 학술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용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담고 있어서 품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 증보판을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기준으로 채택한 학술지가 (필자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로, 성균관법학은 2020년부터 그 증보판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⁶⁾

4.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정립의 필요성은 학계를 넘어서 법조실무계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나아가, 2000년, 2015년 및 2017년에 법률문헌 작성 및 인용방법 표준안이 발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종래 제시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은 품질(quality)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5) 사법정책연구원, 위의 증보판, 97-165면(축약형태 및 영문명은 증보판의 97면부터 165면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6) 필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증보판을 기준으로 채택하게 한 것이다.

즉,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사례만 제시한 후 부연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게다가 여러 학술지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기존 인용방법과 다른 인용방법이 제시되어 있거나 일부 오류(특히, 국문법상 오류)가 발견된다.

둘째,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발간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이 여러 학술지에서 넓게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확산(diffusion)의 문제가 있다.

셋째, 2000년에 발간된 ‘법학교수회 판’은 초판이 발간된 이후 증보판이 발간된 바가 없다. 즉, 지속적인 관리(maintenance)의 문제가 있다. 물론,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년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시안을 발간한 후 2017년 그것의 증보판을 발간한 바 있다. 반면, 사법정책연구원(만)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어 그 증보판의 추가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중국이 초판을 발간하면서 3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하였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술지 발간기관들은 각자의 (더러는 조악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시된 인용방법이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통일된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의 품질을 넘어서는 고품질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또 여러 학술지가 그 새로운 지침을 기준으로 채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주요국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 시 참고할 사항을 도출해 본다.

Ⅲ. 주요국 사례 조사

1. 미국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

가. 법률문헌의 작성방법

미국에서 법률문헌 ‘작성’방법만을 다룬 지침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논문작성방법

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참고문헌(이하 ‘미국논문작성법’)이 존재한다.⁷⁾ 그 미국논문작성법은 목차(contents of table)의 항목번호 표기법을 제시하는데 그 예는 아래의 표와 같다.

〈미국 논문 목차에서의 항목번호 표기법〉⁸⁾

CONTENTS
INTRODUCTION
PART I . THE CIRCLE OF THE SELF
Chapter 1. The Confiscated Self

통상 목차는 모두 대문자(CONTENTS)로 적고, 일반적으로 절(PART)은 대문자와 로마숫자의 조합으로 작성하고,⁹⁾ 그 하위제목인 장(Chapter)은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작성한다.¹⁰⁾ 물론, 그 미국논문작성법이 제시하는 표기법들은 미국의 해당 지역에 다른 표기법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동 미국논문작성법은 2000년에 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회 판’ 작성 시 법학논문 작성방법의 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참고되기도 하였다.¹¹⁾ 한편,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지침서는 여러 개가 발견된다. 그 중 가장 애용되는 Bluebook에서의 법학논문의 인용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미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지침서 – Bluebook

Bluebook(이하 ‘블루북’)은 미국에서 가장 애용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지침서이다.¹²⁾ 물론, 미국에도 블루북 외에 다른 법률문헌 인용방법 지침서들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블루북을 미국에서의 통일된 표준안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여전히 블루북이 법률문헌 인용 시

7)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7th ed. 2016), <http://jcs.edu.au/wp-content/uploads/2016/09/A-manual-for-writers-of-research-papers-theses-and-dissertations.pdf>.

8) *Id.* at 351.

9) *Id.* at 350(“In most cases, use roman type with headline-style capitalization unless your local guidelines require sentence-style capitalization.”).

10) *Id.* at 364(“If you include text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part on the part-title page, number the page with an arabic numeral.”).

11) 한국법학교수회, 앞의 표준안(“이 표준은 법률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국의 여러 법률문헌을 표시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방법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와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을 참고하였습니다.”).

12) 블루북의 정식명칭은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인용방법 지침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¹³⁾ 블루북은 1926년 최초 발간되었고,¹⁴⁾ 2021년 현재 제21판까지 발간되었다.¹⁵⁾ 그리고, 블루북은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및 예일 대학의 법학 논문학술지(law review)를 발행하는 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된다.¹⁶⁾ 정리하자면, 블루북의 추가 개정판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하, 블루북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문의 인용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블루북에서의 정기간행물(논문집) 내 학술논문의 인용방법

저자명,[∨] 논문제목,[∨] 권번호[∨] 정기간행물(논문집)축약형[∨] 시작면수[∨] 인용면수[∨] (출판연도)[∨] (“해당 내용”).

※ 박스 내의 “[∨]” 표시는 모두 띄어쓰기를 의미함.

(예) Mitchell Polinsky,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Harv. L. Rev. 869, 870 (1998) (“The analysis of the deterrence objective comprises the first and major part of the Article.”).

- (저자가 2명인 경우 ‘&’로 연결): A. Mitchell Polinsky & Steven Shavel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Harv. L. Rev. 869, 870 (1998).
-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et al.’): A. Mitchell Polinsky et a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Harv. L. Rev. 869, 870 (1998).
- 논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간행물명은 축약형으로 작성한다.

13) Alexa Z. Chew, *Stylish Legal Citation*, 71 Ark. L. Rev. 823, 853 (2019) (“This system also includes some direction from the Bluebook *because the Bluebook is the most popular citation manual . . .*”) (emphasis added).

14) Susie Salmon, *Shedding the Uniform: Beyond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to a More Efficient Fit*, 99 Marq. L. Rev. 763, 775 (2016) (“The Bluebook’s first edition emerged in 1926 . . .”).

15) 해당 유료 사이트: <https://www.legalbluebook.com/>.

16) Julie Cheslik, *The Battle over Citation Form Brings Notice to Lrw Faculty: Will Power Follow?*, 73 UMKC L. Rev. 237, 251 n.18 (2004) (“The Bluebook is compiled by the editors of the Columbia Law Review, the Harvard Law Review,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and The Yale Law Journal.”).

2. 독일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

가. 개요

미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관한 대표적인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통일화 되어 있지 않은 채, 대학을 포함한 여러 법학학술기관이 각자의 인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문헌 인용 시 상당히 통일된 인용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¹⁸⁾ 이하, 독일에서의 법학논문의 인용방법을 살펴본다.

나. 정기 간행물(논문집) 내 논문의 인용방법¹⁹⁾

저자명의 성(姓),[△]논문제목,[△]정기 간행물(논문집)의 축약형[△]출판연도,[△]시작면수,[△](인용면수).

예) *Klein*,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VBI. 2021, 489, (492).

- 저자명은 보통 저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논문의 제목은 어떠한 인용부호 없이, 그리고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고 표기한다.
- 정기 간행물(논문집)의 축약형과 출판연도를 표기한다.
- 게재된 첫 페이지를 표기한 후 인용면수를 양괄호 내에 표기한다.

17) Jana Behrendt, *Why Doesn't Germany Use a Standard Citation Style?*, CITAVI, 2020 ("It might surprise our international readers to learn that compared to the U.S., the situation in Germany is a bit more chaotic. *The main reason is that it's commonplace for individual universities, departments, or professors to create their own citation style guidelines.* These rules are rarely as fleshed out with as many examples and guidance as a larger publication manual such as APA or MLA. In addition, they frequently contain inconsistencies, confusing rules, and sometimes even idiosyncratic requirements not seen in other citation styles."), <https://www.citavi.com/en/planned-accidents/articles/why-doesnt-germany-use-a-standard-citation-style>.

1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Guid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Legal Citation 66 (1st ed. 2006) ("Citation is quite uniform although there are neither binding rules regarding citation nor a national citation manual in Germany."), https://www.law.nyu.edu/sites/default/files/upload_documents/Final_GFILC_pdf.pdf.

19) *Id.* at 70.

3. 영국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

가. 개요

영국에서 법률문헌 인용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용방법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OSCOLA이다.²⁰⁾²¹⁾ 2000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래 4차례 추가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OSCOLA는 총 54면의 분량인데,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영국령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 법률문헌 인용방법은 단 2면만을 할애하고 있다. 이하, 영국에서의 법률논문의 인용 방법을 살펴본다.

나. 정기 간행물(논문집) 내 논문의 인용방법

- ① 저자명,[∨]‘논문제목’[∨][출판연도] 정기 간행물(논문집)명의 완전형 또는 그것의 축약형[∨]시작면수,[∨]인용면수; 또는
- ② 저자명,[∨]‘논문제목’[∨](출판연도) 권수(volume) 정기 간행물(논문집)명의 완전형 또는 그것의 축약형[∨]시작면수,[∨]인용면수

예) Paul Craig, ‘Theory, “Pure Theory” and Values in Public Law’ [2005] PL 440, 441

Alison L Young, ‘In Defence of Due Deference’ (2009) 72 MLR 554, 557

- 논문 제목은 작은따옴표(‘ ’)안에 표기한다.
- 출판연도 자체로 권수(volume)에 대한 의미까지 지정하는 것이거나 권수가 없는 경우에는 양괄호 내에 출판연도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 (큰괄호) 안에 기재한다.
- 정기 간행물(논문집) 명은 완전형 또는 축약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축약형태로 표기한다.

20) OSCOLA-Oxford University Standard for Citation of Legal Authorities, https://www.law.ox.ac.uk/sites/files/oxlaw/oscola_4th_edn_hart_2012.pdf.

21) *United Kingdom Legal Research Guide*, Georgetown Law Library (“OSCOLA is the most widely used system of legal citation in the UK. It has been adopted by most UK law schools and by journals and book publishers in the UK and beyond.”) (emphasis added), <https://guides.ll.georgetown.edu/c.php?g=365741&p=2471225>.

- 논문 시작면수를 기재한 후 쉼표(,)로 구분한 후 마지막에 인용면수를 기재한다.
주의할 점은 그 인용면수 다음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²²⁾

4. 일본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

가. 개요

2005년 일본의 “법률편집자간담회”는 법률문헌 등 출처표시방법”(이하 ‘일본출처표시방법’)을 발간하였다.²³⁾ 그 일본출처표시방법은 1989년 초안이 제시된 이래 200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그 후 2014년 개정판(이하, ‘2014 출처표시방법집’)이 발간되었다. 총 35면 분량에 달한다. 그 2014 출처표시방법집이 일본에서 표준안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²⁴⁾ 이와 더불어, 개별 대학의 사례로는 2017년 도쿄대학 법과대학원이 발간한 문헌 인용방법집이 있고, 총 18면의 분량에 달한다. 그 인용방법집은 해외문헌의 인용방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경대학 특유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인용방법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하, 일본에서의 논문의 인용방법을 살펴본다.

나. 정기간행물(논문집) 내 논문의 인용방법²⁵⁾

저자명 「논문제목」 정기간행물(논문집)명#권#호인용면수 (출판연도)

(예) 山口厚「刑法定—過去・現在とその課題」ジュリ1348号2頁以下 (2008)

22) OSCOLA, *supra*, at 7(“OSCOLA uses as little punctuation as possible. . . . *Insert commas to separate items that may otherwise run together and cause confusion*, such as runs of numbers or authors and titles.”) (emphasis added).

23) 法律編集者懇話會, 「法律文獻 等 出典 表示方法」, 2014, file:///C:/Users/sphwa/Desktop/%EB%B2%95%EB%A5%A0%EB%AC%B8%ED%97%8C%20%EC%9D%B8%EC%9A%A9%EB%B0%A9%EB%B2%95(%EC%9D%BC%EB%B3%B8).pdf.

24) 岡村久道, 「法律論文における出典の表記方法について」, 1998(“前記文書は従わなければ適法な引用と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のものではないが、この法律編集者懇話會は、法律關係の雑誌・書籍の出版に携わる 27 社の編集者で組織されているので、前記文書はデファクトスタンダードとしての地位を占めており、したがって、同項における「公正な慣行」を考慮する上で重要な要素となっている(但し筆者は必ずしもこれに従っていない)。”), <https://www.law.co.jp/okamura/jyouhou/houinyou.htm>.

25) 法律編集者懇話會, 「法律文獻 等 出典 表示方法」, 2014, file:///C:/Users/sphwa/Desktop/%EB%B2%95%EB%A5%A0%EB%AC%B8%ED%97%8C%20%EC%9D%B8%EC%9A%A9%EB%B0%A9%EB%B2%95(%EC%9D%BC%EB%B3%B8).pdf.

大村敦志「大きな公共性から小さな公共性へ―「憲法と民法」から出發して」法時76卷2号(2004) 71頁以下

- 논문 제목의 경우 「 」(홑낫표)안에 표기한다.
- 권, 호, 면 (출판연도)의 순으로 표기하거나 권, 호, (출판연도), 인용면수의 순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모두 붙여 표기한다. 다만, 출판연도는 양괄호 안에 표기한다.
- 논문 인용 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중국의 법률문헌의 작성·인용방법

가. 개요

2020년 중국에서는 “법학인용수첩(法學引注手冊, Manual of Legal Citation)”이 발간되었다. 그 법학인용수첩 발간의 큰 취지는 인용방법의 통일화이고, 35개 기관이 공동으로 그것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학인용수첩의 총분량은 108면에 달하는데, 법률문헌 ‘작성’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중국 법학인용수첩에서의 ‘논문’의 인용방법을 살펴본다.

나. 정기 간행물(논문집) 내 논문의 인용방법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 《정기 간행물(논문집)명》 출판연도/#권/#호,[△]인용면수.

(예) 季衛東: 《法律程序的意義: 對中國法制建設的另一种思考》, 載《中國社會科學》1993年第1期.

- 저자명 뒤에 쌍점(:)을 사용하여 논문 제목과 구분한다.
- 논문 제목 및 간행물명 의 경우 《 》안에 표기한다.
- 쉼표(,)는 논문 제목과 간행물명을 구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모두 붙여서 표기한다.
- 마침표는 ‘.’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소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및 중국에서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지침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학논문의 인용방법을 중심으로 국가별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아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문헌 인용방법 지침서로서 블루북과 OSCOLA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침서가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주목할 점은 최근 중국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들인 노력과 과정은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추가 개정판 작업 시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하,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품질제고, 확산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본다.

IV.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

1. 기본원칙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안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이하,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 간결성: 입력(typing)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한다.
- 가독성: 독자가 피인용문헌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접근성: 독자가 피인용문헌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완결성: 피인용문헌의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명확성: 피인용문헌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통일성: 국어문법, 법원 판결문의 기재양식과의 통일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확산성: 가급적 여러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 국제성: 외국자료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애용되는 인용방법을 따른다.
- 공감성: 각 원칙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결에 따른다.

2. 학술논문 체계의 통일화

가. 논문의 체계에 대한 현황

	정기 간행물명	항목 기재 순서
사	‘사법’誌 ²⁶⁾	표지, ²⁷⁾ 초록(국문 및 영문 등) 및 주제어(국문 및 영문 등), 각

- 26) 『사법』지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사법부, https://www.scourt.go.kr/judiciary/journal/regulation/regulation_04/index.html(최종방문: 2021. 8. 24.).
- 27) 위의 투고규정(표지에는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 성명, 소속, 직책) 및 연락처를 기재”).
- 28) 『법조』지 원고지 작성 및 투고 요령, 법조협회, <http://www.bupjo.or.kr/html/sub10.asp>(최종방문: 2021. 8. 24.).
- 29) 위의 투고 요령(표지에는 “① 원고의 종류, ②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③ 성명(괄호안에 한자 성명 / 영문 성명 표기 ex. 홍길동(洪吉童 / Hong, GilDong), ④ 인적사항(소속, 직책, 학위), ⑤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소,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각주에는 줄저, 줄고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 30) 저스티스 지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한국법학원, <https://www.lawsociety.or.kr/%EC%A0%80%EC%8A%A4%ED%8B%B0%EC%8A%A4-%EA%B4%80%EB%A0%A8-%EC%A0%9C%EA%B7%9C%EC%A0%95>(최종방문: 2021. 8. 24.).
- 31) 『서울대학교 법학』 투고규정(2017. 5. 26. 개정), file:///C:/Users/sphwa/Downloads/%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20%EB%B2%95%ED%95%99%20%ED%88%AC%EA%B3%A0%EA%B7%9C%EC%A0%95.pdf(최종방문: 2021. 8. 24.).
- 32) 고려법학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https://kulri.korea.ac.kr/kulri/materials/KULRule.do?mode=view&articleNo=721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최종방문: 2021. 8. 24.).
- 3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원고작성요령, <https://ils.jams.or.kr/co/main/jmMain.kci>(최종방문: 2021. 8. 24.).
- 34)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원고투고지침, file:///C:/Users/sphwa/Downloads/000000000002.pdf(최종방문: 2021. 8. 24.).
- 35)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작성방법, https://cri.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EssentialView.kci?guidDivCd=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최종방문: 2021. 8. 24.).
- 36) 법제연구 집필규정,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sub04_02_01_01.do(최종방문일: 2021. 8. 24.).
- 37) 공법연구 원고작성요령, 한국공법학회, <https://www.kpla.or.kr/writing-tips>(최종방문일: 2021. 8. 24.).
- 38) 민사집행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http://kcjela.org/sub3_4(최종방문일: 2021. 8. 24.).
- 39)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한국형사법학회, https://kcla.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kci?guidSeq=0000000000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최종방문: 2021. 8. 24.).
- 40)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http://www.constitution.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3&page=14(최종방문: 2021. 8. 24.).

	정기 간행물명	항목 기재 순서
법 부		주, 참고문헌
	‘법조’誌 ²⁸⁾	표지, ²⁹⁾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목차, 본문, 외국어초록, 참고문헌 ※ 참고문헌의 정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가. 문헌의 배열순서는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합 니다. - 나.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국내문 헌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합니다. - 다. 문헌의 인용방법은 위 8.의 인용방법에 따르되, 면을 기재 하지 않습니다.
	‘저스티스’誌 ³⁰⁾	한글제목, 한글저자명,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 어초록, 외국어주제어 ※ 참고문헌의 정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위의 ‘법조’지의 방법과 동일함
법 학 연 구 소	‘서울대학교 법학’誌 ³¹⁾	—
	‘고려법학’誌 ³²⁾	—
	연세대 ‘법학연구’誌 ³³⁾	제목, 저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한양대 ‘법학논총’誌 ³⁴⁾	제목, 저자명, 목차, 본문, 주제어(국문 및 영어), 참고문헌, 국문 및 영문초록
연 구 기 관	‘헌법재판연구원’誌 ³⁵⁾	논문 제목, 논문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각주에 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법제연구원’誌 ³⁶⁾	(국문) 논문제목, 필자명(소속 및 직위 각주처리), 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논문제목, 필자명(소속기관 각주처리), 초록, 주제어
한국 법학 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
법 학	‘공법연구’誌 ³⁷⁾	—

	정기 간행물명	항목 기재 순서
회	‘민사집행법연구’誌 ³⁸⁾	목차, 참고문헌, 국문 및 외국어초록, 국문주제어(외국어주제어 병기)
	‘형사법연구’誌 ³⁹⁾	제목(한글 및 외국어),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국문초록, 목차, 본문, 국문 및 외국어주제어,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헌법학연구’誌 ⁴⁰⁾	논문 제목, 논문 외국어(로마자) 제목, 저자 성명(각주에 소속과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초록[필자의 외국어(로마자) 성명과 성명 각주의 외국어(로마자) 소속과 직위 포함], 외국어주제어

나. 논문의 체계 통일화 방안

제1안: 국문제목(영문제목병기), 목차 없음, 초록(국문 및 영문 등) 및 주제어(국문 및 영문 등),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표기한다.

제2안: 국문제목(영문제목병기),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목차, 본문, 외국어초록, 참고문헌 순서로 표기한다.

제3안: 국문제목(영문제목병기),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제4안: 국문제목(영문제목병기), 국문초록, 목차, 본문, 국문 및 외국어주제어,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제5안: 국문제목,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순서로 표기한다.

제6안: 국문제목,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순서로 표기한다.

제7안: 국문제목, 목차, 본문,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순서로 표기한다.

제8안: 우선, 국문논문제목,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표기한 후 외국어논문제목,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순서로 표기한다.

필자의 제안: 국문제목, 저자소속및성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외국어제목, 외국어저자소속및성명, 외국어초록, 외국어주제어, 참고문헌

다. 본문의 목차 표기방법

표기 사례	활용빈도
I, 1, 가., (1), (가)	3건
I., 1., 가., (1), (가), ①	1건
I, 1, 가., (1), (가), 1), 가), (i), i)	1건
I., 1., 가., (1), (가), 1), 가), ①, ㉠	1건
I., 1., (1), 1), ①	3건
I., 1., (1), 1), ①, i)	2건
I., 1., (1), 1), 가.	1건
I., 1., (1), 1), (가), 가), i)	1건
I., 1., 1), (1), 가, 가), ①	1건

위의 통계에 의하면 본문 목차의 표기방법은 크게는 ① 로마숫자, ② 아라비아숫자, ③ 한글, ④ 양괄호 내에 아라비아숫자, ⑤ 양괄호 내에 한글 순서로 표기하는 방법과 ① 로마숫자, ② 아라비아숫자, ③ 양괄호 내에 아라비아숫자, ④ 반괄호 내에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달리 말하면,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교차하여 표기하거나 아라비아숫자를 순서대로 표기한 후 이어서 한글을 표기하는 한편, 공통적으로 괄호의 표기는 양괄호에서 반괄호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이하,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논문 목차 표기방법 통일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본문의 목차 표기방법 통일화 방안

제1안: I., 1., 가., (1), (가)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① (원숫자)를 표기한다.

제2안: I., 1., 가., (1), (가)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1), 가), ①, ㉠ 순서로 표기한다.

제3안: I., 1., 가., (1), (가),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1), 가), (i), i), 순서로 표기한다.

제4안: I., 1., (1), 1)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①, i) 순서로 표기한다.

제5안: I., 1., (1), 1)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가. 순서로 표기한다.

제6안: I., 1., (1), 1) 순서로 표기한 후 이어서 (가), 가), i) 순서로 표기한다.

제7안: I., 1., 1), (1), 가, 가), ① 순서로 표기한다.

제8안: I., 1., 가., 1), 가), (1), (가) 순서로 표기한다.

필자의 제안: I. 1. 가. 1) 가) (1) (가)

3. 정기간행물(논문집) 내 학술논문의 인용방법

가. 일반 원칙

저자명,[△]“논문 제목”,[△]정기 간행물(논문집)명[△]제X권[△]제Y호,[△]출판기관, 출판연도,[△]인용면수(“해당 내용.”).

※ 박스 내의 “△” 표시는 모두 띄어쓰기를 의미함.

(예) 홍길동,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구별”, 법학논문집 제4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123면(“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홍길동,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구별”, 인권과 정의 제236호, 대한변호사회, 1996, 133-134면.

-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도의 순에 따라 기재하고 각 이름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둔다.
-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도 있으며, 제1저자의 성명만 표기하고 그 뒤에 ‘외 공저’로 표기한다.
- 발간연도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월(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나. 국내 학술논문 인용방법 현황

-
- 41) 『사법』지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사법부, https://www.scourt.go.kr/judiciary/journal/regulation/regulation_04/index.html(최종방문: 2021. 8. 24.).
 - 42) 『법조』지 원고지 작성 및 투고 안내, 법조협회, <http://www.bupjo.or.kr/html/sub10.asp>(최종방문: 2021. 8. 24.).
 - 43) 저스티스 지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한국법학원, <https://www.lawsociety.or.kr/%EC%A0%80%EC%8A%A4%ED%8B%B0%EC%8A%A4-%EA%B4%80%EB%A0%A8-%EC%A0%9C%EA%B7%9C%EC%A0%95>(최종방문: 2021. 8. 24.).
 - 44) 『서울대학교 법학』 투고규정(2017. 5. 26. 개정), file:///C:/Users/sphwa/Downloads/%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20%EB%B2%95%ED%95%99%20%ED%88%AC%EA%B3%A0%EA%B7%9C%EC%A0%95.pdf(최종방문: 2021. 8. 24.).
 - 4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원고작성요령, <https://ils.jams.or.kr/co/main/jmMain.kci>(최종방문: 2021. 8. 24.).
 - 46)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원고투고지침, file:///C:/Users/sphwa/Downloads/0000000000002.pdf(최종방문: 2021. 8. 24.).
 - 47) 위의 원고작성요령;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2000, 37면(“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이나 글을 표시할 때에는 저자, 논문이나 글의 제목, 정기간행물의 명칭과 통권호수, 인용된 페이지, 간

구분	정기간행물명	인용방법
사 법 부	‘사법’ 誌 ⁴¹⁾	저자명, √ “논문제목”, √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월.), √ 인용면수. ※ “약어 사용과 판결, 문헌 인용 시 가급적 해당 페이지에 대한 ‘면’, ‘쪽’ 등의 글자 표시는 생략한다.” ※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를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 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 외 2인’ 등으로 표기한다.”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전게서’, ‘위 논문’ 등의 표현 대신, 「저자명(前註 번호), 인용 면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 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96. 4.), 133-139. 10) 윤진수(주 3), 135.
	‘법조’ 誌 ⁴²⁾	저자명, √ “논문 제목”, √ 간행물명(제X권 √ 제Y호 또는 통권 √ 제Z호), √ 발행기관(발행연월), √ 인용면수. ※ ‘면’ 대신 ‘쪽’ 또는 ‘p.’ 사용가능 예) 홍길동, “우리나라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제90권 제5호), 법조협회(2007. 3.), 110면(또는 110쪽 / p. 110) 홍길동,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 및 주주의 손해”, 법조(통권 제 690호), 법조협회(2009. 3.), 240면. ※ 반복 인용하는 경우 1. 국내문헌 － 가. 저자, 앞의 논문(또는 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면. 예) 저자, 앞의 논문, ○○면 / 저자, 앞의 논문(주 10), ○○면. 나. 저자, 위의 논문, ○○면.

행연월 등이 들어간다. 논문이나 글의 제목은 국문의 경우 큰따옴표에 의하여,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구분하여 준다.”).

48) 위의 원고작성요령.

49)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작성방법, https://cri.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EssentialView.kci?guidDivCd=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최종방문: 2021. 8. 24.).

50) 공법연구 원고작성요령, 한국공법학회, <https://www.kpla.or.kr/writing-tips>(최종방문일: 2021. 8. 24.).

51) 민사집행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http://kcjela.org/sub3_4(최종방문일: 2021. 8. 24.).

52)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한국형사법학회, https://kcla.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kci?guidSeq=000000000002&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최종방문: 2021. 8. 24.).

53) ‘공법연구’지의 규정과 동일함.

54) 한양대학교 법학논총지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규정과 동일함.

55) 한양대학교 법학논총지의 규정과 동일함.

56)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http://www.constitution.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3&page=14(최종방문: 2021. 8. 24.).

구분	정기간행물명	인용방법
	‘저스티스’誌 ⁴³⁾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명 √제X권 √제Y호(발행연월), √인용면수. ※ 필요한 경우 발행처의 기재가 가능함 예)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07호(2007. 4), 20면.
법 학 연 구 소	‘서울대학교 법학’誌 ⁴⁴⁾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명(고딕체), √제X권 √제Y호(발행연도), √인용면수(국문 문헌인 경우 쪽, 면 또는 p., pp. 혼용 또는 영문 문헌의 경우 p. 또는 pp.) 예) 홍길동, “국제법상 침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X권 제Y호(2001. 2.), pp. 100-121.
	‘고려법학’誌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명」 제X권 √제Y호, √출판년도, √인용면수.
	연세대 ‘법학연구’誌 ⁴⁵⁾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명』 제X권 √제Y호, √출판년도, √인용면수.
	한양대 ‘법학논총’誌 ⁴⁶⁾	저자명, √“논문 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제X권 √제Y호), √발행기관, √발행연월, √인용면수. ※ 논문의 제목은 동양문헌일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한다. ⁴⁷⁾ ※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⁴⁸⁾
연 구 기 관	‘헌법재판연구원’誌 ⁴⁹⁾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X권 √제Y호(출판연도), √인용면수. ※ 논문 제목 및 학술지명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임
	‘법제연구원’誌	저자명, √“논문 제목”, √「서명」 √제X권 √제Y호, √출판기관, √출판연도, √인용면수. ※ 별도로 출판기관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 법학 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X권 √제Y호, √출판연월, √인용면수. 예) 박성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계간 저작권, 1995. 겨울, 16면.
법 학 회	‘공법연구’誌 ⁵⁰⁾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X권 √Y호, 출판연도, 인용면수. ※ “필요한 경우 출판연도 앞에 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 “월간지의 경우 제X권 Y호와 출판 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연구’誌 ⁵¹⁾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X권 √Y호, √발행연도, √인용면수.
	‘형사법연구’誌 ⁵²⁾	저자명, √논문 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제X권 √제Y호),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인용면수. ※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구분	정기간행물명	인용방법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 ⁵³⁾ ※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한다. ⁵⁴⁾ ※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⁵⁵⁾
	‘헌법학연구’ 誌 ⁵⁶⁾	저자명, [△] “논문 제목”, [△] 『학술지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인용면수. ※ “필요한 경우 잡지의 발행기관을 출판년도 앞에 표시할 수 있다.” 예)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과제”,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359쪽 이하.

1) 저자가 여럿인 경우

가) 표기 사례

제1안: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를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 외 2인’ 등으로 표기한다.

제2안: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 외’로 표기한다.

제3안: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명 이상인 경우 ‘○○○ 외 공저’로 표기한다. 다만, 저자를 모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4안: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명의 경우에도 모두 적시한다. 다만, 저자가 4명 이상인 경우 ‘○○○ 등 4명’ 또는 ‘○○○ 외 3인’ 등으로 표기한다.

필자제안: 가운뎃점으로 구분하고, 2인까지는 실명을 적시하고, 3인 이상인 경우 저자가 재량으로 기재한다.

나) 현황에 대한 통계

유형	표기 사례	활용빈도
저자가 2명인 경우	가운뎃점(.)	3건
저자가 2명인 경우	사선(/)	2건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 외 2인’ 등	1건

유형	표기 사례	활용빈도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 외’	2건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 표기(필요한 경우)	1건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 표기	—
저자가 4명 이상인 경우	‘○○○ 등 4인’, ‘○○○ 외 3인’, ‘외 공저’, 또는 ‘외’	—

2) 논문 제목

가) 표기 사례

제1안: 낫표(「 」)에 가두는 경우

제2안: 겹낫표(『 』)에 가두는 경우

제3안: 쌍따옴표(“ ”)에 가두는 경우

제4안: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

필자제안: 절대 다수의 사례를 따라 쌍따옴표에 가둠

나) 현황에 대한 통계

논문 제목 표기 사례	활용빈도
낫표(「 」)	1건
겹낫표(『 』)	—
쌍따옴표(“ ”)	11건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	1건

3) 간행물명

가) 표기 사례

제1안 - 낫표(「 」)에 가두는 경우

제2안 - 겹낫표(『 』)에 가두는 경우

제3안 - 쌍따옴표(“ ”)에 가두는 경우

제4안 - 고딕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5안 -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

필자제안: 절대 다수의 사례를 따라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음

나) 현황에 대한 통계

간행물명 표기 사례	활용빈도
낫표(「 」)	3건
겹낫표(『 』)	1건
고딕체	1건
쌍따옴표(“ ”)	—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	8건

4) 간행물명의 구체적 정보

가) 표기 사례

제1안: 간행물명과 그것의 구체적 정보를 콤마(,)로 구분하지 않고 표기한다.

제2안: 간행물명과 그것의 구체적 정보를 콤마(,)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필자제안: 제1안

나) 현황에 대한 통계

간행물명의 구체적 정보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9건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4건

5) 출판연월

가) 표기 사례

제1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안에 가두거나 괄호 없이 표기한다.

제2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안에 가두어 표기한다.

제3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없이 표기한다.

제4안: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한 구분 없이, 그 출판연월은 ‘괄호()’안에 가두거나 괄호 없이 표기한다.

제5안: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한 구분 없이, 그 출판연월은 ‘괄호 ()’안에 가두어 표기하여야 한다.

제6안: 간행물의 정보 표기와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한 구분 없이, 그 출판연월은 ‘괄호 ()’없이 표기한다.

필자제안: (괄호는 앞 단어와 붙여야 한다는 국어문법과 입력(typing)수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간행물이름 제X권 제Y호, 출판기관, 출판연도, 인용면수(“참고된 내용.”).

나) 현황

출판연월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연도) 또는 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
③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
④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또는 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
⑤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	5건
⑥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	—

6) 출판연도 + 출판월(출판기관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가) 표기 사례

제1안: 간행물의 ‘출판연도’와 함께 ‘출판월’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2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명과 그것의 구체적 정보를 콤마(,)로 구분하고, 그 간행물의 ‘출판연도’ 및 ‘출판월’ 모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안: 원칙적으로 정기간행물의 출판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월’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출판월도 병기할 수 있다.

※ 월간지의 경우 제X권 Y호와 출판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안: 간행물의 ‘출판연도’와 함께 ‘출판월’을 병기하거나 출판연도만을 표기할 수 있다.

나) 현황에 대한 통계

출판연도 + 출판월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월) ※ 출판연도와 월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해당 년수 및 월수 뒤에 ‘년’ 및 ‘월’을 표기하거나 ‘년’ 및 ‘월’을 생략하고 마침표(.)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년 3월);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년 3월;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	3건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월) 예) 서울대학교 법학, 제X권 제Y호(2001. 2.)	3건
③ 원칙: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출판연도만 기재하는 경우 해당 년수 뒤에 ‘년’ 또는 ‘마침표(.)’는 생략한다.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 월간지의 경우 예) 홍길동,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월간법제, (2009년 12월); 또는 홍길동,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월간법제, (2009. 12.)	—
④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월); 또는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

7) 출판기관

가) 표기 사례

제1안: 필요한 경우 출판기관을 표기할 수 있으며, 그 출판기관명은 출판연도 앞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2안: 출판기관을 표기하여야 한다. 그 출판기관명은 간행물의 구체적 정보와 출판연도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안: 원칙적으로 출판기관을 표기하여야 한다. 그 출판기관명은 간행물의 구체적 정보와 출판연도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만, 간행물명만으로 출판기관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출판기관명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간행물의 구체적 정보 뒤에 바로 이어서 출판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필자제안: 원칙적으로 출판기관을 표기하여야 하되, 간행물명만으로 출판기관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저자의 재량으로 출판기관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 그러한 생략의 경우에는 간행물의 구체적 정보 뒤에 바로 이어서 출판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현황에 대한 통계

출판기관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기관, 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1998)	2건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 [▽] (출판연월) ※ 출판연도와 월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해당 년수 및 월수 뒤에 ‘년’ 및 ‘월’을 표기하거나 ‘년’ 및 ‘월’을 생략하고 마침표(.)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3월);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	1건
③ 원칙: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 [▽] (출판연월) 예) 서울법학 제X권 제Y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예외: 서울대학교 법학 제X권 [▽] 제Y호(2021)	—

8) 출판기관의 표기 시 출판연월

가) 표기 사례

제1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 출판기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안에 가두거나 괄호 없이 표기한다.

제2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 출판기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제3안: 콤마(,)를 사용하여 간행물의 정보 표기, 출판기관, 출판연월을 구분하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없이 표기한다.

제4안: 출판기관과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안에 가두거나 괄호 없이 표기한다.

제5안: 출판기관과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제6안: 출판기관과 출판연월을 콤마(,)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그 출판연월은 괄호 없이 표기한다.

필자제안: 출판월(일)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판연도만 표시한다. (괄호는 앞 단어에 붙여야 한다는 국어문법과 입력(typing) 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출판연도는 괄호 없이 표기한다. 아래의 ③번 방식에 해당한다.

나) 현황

출판기관+출판연도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 [∨] (출판연도) 또는 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또는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 [∨] (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2건
③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 [∨] 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8	2건
④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출판연도) 또는 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1998); 또는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1998	

출판기관+출판연도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⑤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1998)	1건
⑥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 출판기관/출판연도 예)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1998	—

9) 인용면수

가) 1면 인용 시 표기 사례

재1안: ‘면’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2안: ‘쪽’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3안: ‘p.’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4안: ‘pp.’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5안: ‘면’ 또는 ‘쪽’을 사용하는 경우

제6안: ‘면’, ‘쪽’, ‘p.’, 또는 ‘pp.’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제7안: ‘면’, ‘쪽’ 등의 글자 표시는 생략하는 경우

제8안: 원칙적으로 ‘면’(‘쪽’)을 사용하되,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면’의 글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필자제안: 출판연도, XX면(“참고된 내용.”).

(1) 현황에 대한 통계

인용면수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	2건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쪽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쪽	1건
③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p. 3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p. 3	—
④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pp. 3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pp. 3	—

인용면수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⑤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면 또는 3쪽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쪽	—
⑥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면, 3쪽, p. 3 또는 pp. 3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쪽;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p. 3;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pp. 3	2건
⑦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	1건
⑧ 원칙: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면 예외: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	—

나) 1면 이상의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제1안: 물결표시(‘~’)를 사용한 후 최종 인용면수 뒤에만 ‘면’을 사용한다.

제2안: 일자표시(‘-’)를 사용한 후 최종 인용면수 뒤에만 ‘면’을 사용한다.

제3안: 물결표시(‘~’) 또는 일자표시(‘-’)를 사용가능하고, 최종 인용면수 뒤에만 ‘면’을 사용한다.

제4안: 물결표시(‘~’) 또는 일자표시(‘-’)를 사용가능하고, 시작 인용면수와 최종 인용면수 뒤 모두에 ‘면’을 사용한다.

필자제안: 일자표시(‘-’)를 사용한 후 최종 인용면수 뒤에만 ‘면’을 사용한다. 위의 제2안에 해당한다.

(2) 현황

인용면수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4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4면	—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4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4면	—

인용면수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③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4면 또는 3-4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4면;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4면	—
④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면~4면 또는 3면-4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4면; 또는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4면	—
필자제안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출판연도, 3-4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 2021, 3-4면	

9) 마침표(.) 및 해당 문장

가) 표기 사례

제1안: 인용문구가 없는 경우 인용면수 뒤에 반드시 마침표(.)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제2안: 인용문구가 있는 경우 인용면수 뒤에 띄움(∨)없이 바로 이어지는 괄호 안에 인용문구를 가둔 후 마침표(.)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제3안: 인용문구가 없는 경우 인용면수 뒤에 반드시 마침표(.)로 마무리를 하되, 인용문구가 있는 경우 인용면수 뒤에 띄움(∨)없이 바로 이어지는 괄호 안에 인용문구를 가둔 후 마침표(.)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현황

마침표 및 해당문장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 출판기관(출판연도), 3면.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면.	—
② 간행물명 [∨] 제X권 [∨] 제Y호(출판연도), 3-4면(“법령과 관례의 인용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예) 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3호(2021), 3-4면(“법령과 관례의 인용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
③ ①+②	—

10) 반복인용

가) 바로 위의 각주문헌을 반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표기 사례

제1안 - ‘위의 논문’ 표시 없이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인용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제2안 - 저자명, 위의 논문,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제3안 - ‘저자명’ 표시 없이 위의 논문, 인용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1) 현황

바로 위의 논문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4) 윤진수(주 3), 135면	—
② 저자명, [∨] 위의 논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4) 윤진수, 위의 논문, 135면	1건
③ 위의 논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4) 위의 논문, 135면	1건

나) 앞에서 인용되었던 문헌을 반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1) 표기 사례

제1안: ‘앞의 논문’ 표현 없이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인용 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제2안: 저자명과 ‘앞의 논문’을 콤마(,)로 구분하고, 해당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제3안: 저자명, 앞의 논문(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인용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제4안: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앞의 논문, 인용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제5안: 저자명, 주 ○)의 글, 인용면수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2) 현황

앞의 논문 인용 시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10) 윤진수(주 3), 135면	1건
② 저자명, [∨] 앞의 논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10) 윤진수, 앞의 논문, 135면	1건
③ 앞의 논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10) 윤진수, 앞의 논문(주10), 135면	1건
④ 저자명(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 [∨] 앞의 논문, [∨]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10) 윤진수(주 3), 앞의 논문, 135면	—
⑤ 저자명, 주 ○) 글, 인용면수 예) 3) 윤진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236호(1989), 133-139면 10) 윤진수, 주 3)의 글, 135면	1건

마. 기타 사항

1) 단행본 내의 논문의 인용방법

저자명,[∨]“논문 제목”,[∨]책 제목(편자명[∨]편 또는 편저자명[∨]편저),[∨]출판기관, 출판연도,[∨]인용면수.

(예) 홍길동, “과학기술분쟁과 그 해결”, 과학기술과 법(손경한 편저), 박영사(2021), 128면.

※ 편자와 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저자를 제일 먼저 적시해야 함

2) 학위논문의 인용방법

저자명,[∨]“논문 제목”,[∨]학위수여대학교이름 석사(또는 박사)학위논문,[∨]발표년도,[∨]인용면수.

가) 현황

학위논문 표기 사례	활용빈도
① 홍길동,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20면.	4건
② 홍길동,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0면(“참고된 내용.”).	—

(1) 학위논문 인용방법 표준화 방안

제1안: 논문제목 뒤에 학위명을 적고 학위 논문임을 명시한 후 학위수여 대학교명을 표기한다.

제2안: 논문제목 뒤에 대학교명 및 학위명을 병기하여 표기한다.

필자제안: 논문제목 뒤에 대학교명, 석사(또는 박사)학위논문, 출판연도, 인용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8. 소결

위에서 논문에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의 인용방법을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필자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장 회의 및 나아가 주요 학회 학회장 회의 등을 통하여 그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것이 선택될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절대로 틀리고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다. 선택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집단지성에 의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V.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확산을 위한 방안

1.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용역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015년 및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그러하였듯이, 한

국연구재단도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지 아래,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5월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필자가 속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⁵⁷⁾ 그 연구용역의 덕분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장을 모시고 인용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비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제공된 것이다.

2.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장의 집단지성에 의한 인용방법 결정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용역의 덕분으로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장을 모시고,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더 많은 대학의 법학연구소장을 모시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서울시내 주요 7대 대학 및 지방주요 7개 국립대학, 총 14개 대학의 법학연구소장의 성명 및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2021년 9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집단지성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임을 믿는다. 다만, 연구용역의 예산 및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 쉽게 예상된다. 그 후속 논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주요 학회(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회의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학회(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집단지성에 의한 인용방법 결정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초판에 가급적 많은 기관이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 2020년 중국이 유사한 지침을 제정하며 3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주요 학회의 학회지가 초판의 공동발간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요 학회의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을 초대하여,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4. 소결

위에서 설명한 집단지성에 의한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결정은 그 지침의 품질을

57)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기간은 2021. 6. 18. 부터 11. 18. 까지 이다.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 지침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학회, 대학, 기관 등의 참여도를 높인다. 즉, 품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확산의 문제도 더불어 해결하게 한다.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며,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그 지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 그 지속 가능한 관리의 방안에 대해 논한다.

VI.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안

1. 주요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관리 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가장 애용되는 블루북은 현재까지 총 21판이 발간되었다.⁵⁸⁾ 판이 거듭됨에 따라 품질이 나아졌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 블루북은 하버드, 콜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및 예일의 4개 대학의 법학논문학술지(law review)를 발행하는 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되는데 공동 발행기관의 수를 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물론, 미국의 사례는 영국 또는 일본의 사례보다는 나은 편이다.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OSCOLA가 가장 유명하며, 2000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래 4차례 추가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일본에서는 2005년 법률편집자간담회가 출처표시방법을 발간하였다. 그 출처표시방법은 1989년 초안이 제시된 이래 200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그 후 2014년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개정의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 대학 및 학회가 그 발간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여러 기관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노력 끝에 2020년 초판을 내면서 35개 기관이 그 초판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2. 법률문헌 인용방법 초판의 공동 발간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의 인용방법,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시안,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증보판은 품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58) 해당 유료 사이트: <https://www.legalbluebook.com/>.

못하였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즉, 우리 회 또는 우리 연구원이 만든 것에 모두 따르기를 희망만 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미리 간파하고 초판에서부터 3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 초판도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물론,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 몇 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보조, 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분배는 필요할 것이나, 각 기관 모두가 공동 발간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관리의 실질적 책임기관

공동발간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즉, 누구도 책임 또는 부담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 개정판의 지속적 발간이 요원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 몇 개 기관이 공동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 즉, 공동발간기관 중 몇 개가 실질적 책임을 맡는 공동관리기관이 되는 것이다. 바람직하기로 는 해당 기관이 업무협정을 맺어,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둘 것이 요망된다.

4. 매 5년마다 개정판 발간

미국의 블루북은 21판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의 OSCOLA도 4차례 추가 개정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개정판 발간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동발간기관 및 공동관리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할 것을 약속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개정판 작업 및 논의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VII. 결론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의 통일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법률가가 동의한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가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고, 사

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시안을, 2017년 증보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3차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필자는 품질, 확산, 관리의 3가지 문제로 나누어 보았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글은 첫째, 사법정책연구원 증보판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둘째, 여러 대학의 법학연구소가 기준으로 제시한 인용방법, 여러 학회(지)가 제시한 인용방법들을 두루 참고하되, 셋째, 주요 대학, 주요 학회가 그 인용방법의 결정에 참가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그 회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한 단편으로 법학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에 관한 초안을 제시한다.

여러 기관, 여러 대학, 여러 학회가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중국에서 35개 기관이 유사한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35개 이상의 기관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공동 발간으로 인하여 확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블루북의 인쇄본 및 인터넷 판은 유료 판매되고 있다. 다분히 미국적인, 자본주의적인 배포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더 빠른 그리고 더 넓은 확산을 위해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배포할 것이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지속 가능한 관리의 방안으로, 이 글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공동 관리기관’이 될 것을 제안한다. 그 공동 관리기관이 향후의 (예를 들어 매 5년) 개정판 발간을 위한 예산,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다른 대학, 다른 학회도 개정판 발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은 ‘공동 발간기관’이 된다. 공동 관리기관의 역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MOU 등의 형태로 개정판 발간에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국가의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수준이 그 국가의 법률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 글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품질의 문제, 확산의 문제 및 관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제고, 확산 및 지속적 관리의 방안에 관한 토론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훈

I. 시작하는 말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2000년에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제시한바 있고, 사법정책연구원 역시 2015년에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을, 2017년에 그 증보판으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을 각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간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표준안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발표문은 이 같은 현실을 통찰하여 기존 안의 채택이 저조한 원인을 품질, 확산,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 새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이 그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수단들, 즉 입안과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다수 기관에 의한 공동 발간 및 지속적인 관리가 표준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는 토론자 역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께서 새로운 표준안 작성에 관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 작업이 기존 표준안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그 최종 산출물은 형식 과 내용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가 기대됩니다. 법률문헌 인용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에 대한 논의거리를 생산하여 내는 것이 지정토론자로서 부득이 떠맡아야 할 역할이기에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II. 기존 표준안 활용 저조의 원인에 관한 질문

발표문은 기존 표준안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으로서는 품질, 확산,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안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문 곳곳에서 미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중 하나인 Bluebook을 언급하여 이를 주요한 모범 사례로 예시하면서,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안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도 언급되었듯 Bluebook은 제정과정에 단 네 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관리 주체는 사실상 그 중 하나의 대학에 한정되며, 그 품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¹⁾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Bluebook은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품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지목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²⁾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발표문이 언급한 문제들 이외에 혹시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발표문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제시된 세 가지 원인 외에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및 만약 이들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분석 과정이나 근거 등)가 궁금합니다.

III. 표준안의 확산에 관한 질문

발표문은 표준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용방법 표준안의 내용 결정 과정에 가급적 많은 기관이 참여(주요 대학 법학연구소장, 학회장, 편집위원장 등)하게 하고, 그 발간 역시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러한 방안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 연결”되며, 집단지성을 통한 품질 제고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합니다.

1) Susie Salmon, “Shedding the Uniform: Beyond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to a More Efficient Fit”, 99 Marq. L. Rev. 763(2016), 778.

2) Op. cit., 794; Darby Dickerson, “An Un-Uniform System of Citation: Surviving with the New Bluebook”, 26 Stetson L. Rev. 53(1996), 95; Richard A. Posner, “The Bluebook Blues”, 120 Yale L.J. 850(2011), 859; Steven K. Homer, “Hierarchies of Elitism and Gender: The Bluebook and The ALWD Guide”, 41 Pace L. Rev. 1(2020).

표준안 활용도의 제고를 모색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표준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 수요자인 다양한 주체들이 갖는 상이한 견해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에 표준안의 내용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일종의 권위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문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품질의 우열에 관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항목(예컨대 공동저자 표기법으로 공동저자명 사이에·또는 / 사용의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표준안의 확산으로 직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결정 및 발간에 누구를 관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세부 내용이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발표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적 결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의사결정자의 대표성 구비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안의 잠재적인 수요자를 확정하고, 연후에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주체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표준안의 잠재적 수요자나 그들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로스쿨, 법과대학, 학회, 사법부, 행정부, 변호사단체 등과 그 구성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논의는 법학연구 및 법조인력 양성 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발표문은 내용 결정 과정에 관여하게 될 주체로 주요대학 법학연구소장, 학회장, 편집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이들 주체들이 표준안 결정에 관하여 갖는 대표성 또는 그 밖의 다른 주체를 참여시킬 필요성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이나 견해가 궁금합니다.

한편 내용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 및 발간·관리의 주체, 또는 이들이 다수일 경우에 이를 주도할 주체 등에 대한 결정은 그 자체가 일정한 함의를 갖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관여하는 기관 등의 성격(국가기관 또는 사적 단체인가 등), 목적(연구, 교수 또는 그에 대한 지원 등), 구성(인적·물적 요소) 및 실질적인 수행능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다수 기관이 발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기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한 발표자의 설명이나 견해가 궁금합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법조인력 양성기관인 로스쿨에서 직접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이를 Bluebook의 폭넓은 보급·활용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³⁾⁴⁾

3) Susie Salmon, "Shedding the Uniform: Beyond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to a More Efficient Fit", 99 Marq. L. Rev. 763(2016), 775.

4) Bluebook 외에 또 다른 표준인 ALWD Manual 역시 이를 통해 확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Ian Gallacher, "Cite Unseen: How Neutral Citation And America's Law Schools Can Cure Our Strange Devotion To Bibliographical Orthodoxy And The Constriction Of Open And Equal Access To The Law", 70 Alb. L. Rev. 491(2007), 509.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법조인과 법학자를 대상으로 법률문헌 인용에 관한 표준안을 교육하는 것이 그 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모색될 가능성은 없는가 궁금하며, 이에 관해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견해나 청사진을 여쭙고 싶습니다.

IV. 표준안의 관리에 관한 질문

발표문은 기존 표준안의 활용이 저조하였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사후관리의 미흡을 강조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특히 개정판 발간의 지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으로서 1926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총 21판에 이르는 개정판이 발간된 Bluebook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지속을 위해서는 소요비용의 부담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문은 표준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과 달리 표준안이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⁵⁾ 사실 우리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유료배포 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준의 고정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므로 무료배포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경우 지속적 관리는 곧 일방적 비용지출을 의미할 것인바, 비용부담 주체의 입장에서는 공익 차원의 기여나 호소를 넘어 관리에 계속적으로 관여할 다른 유인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는 발표문에 언급된 이른바“공유지의 비극”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관하여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유료로 배포되는 Bluebook에서조차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만약 일정 기관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후원 기관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 등에 따른 영향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표준안의 잦은 개정이 곧 품질 개선으로 귀결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Bluebook의 잦은 개정이 과연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가, 또는 매 회 개정에 따라 Bluebook의 분량이 증가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⁶⁾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발표문이 개정판의 발간 간격을 5년으로 설정한

5) Bluebook이 유료로 배포되는 미국에서는 발간 주체인 네 학교 중 발간을 주도한 한 학교와 나머지 학교 간에 발간 수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한바 있다. Fred R. Shapiro, Julie Graves Krishnaswami, "The Secret History of the Bluebook", 100 Minn. L. Rev. 1563(2016), 1586.

6) Richard A. Posner, "The Bluebook Blues", 120 Yale L.J. 850(2011), 851, 859-860.

것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공감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개정판 발간 간격 외에 개정 필요성 판단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나름의 원칙이 설정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궁금합니다.

V. 표준안의 품질에 관한 질문

발표문은 기존 표준안의 활용이 저조하였던 원인으로 가장 먼저 품질의 미흡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여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안의 내용 결정상의 고려 원칙 및 집단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으로 보이기에 이에 관한 질문은 후순위로 미렸으며, 향후 구체적 내용 및 방안의 제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참여자 다수의 결정을 통해서 최선의 품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 동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표준안의 세부 내용이 품질 상 요구되는 원칙에 견주어 하나하나 음미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의 문제와 확산의 문제를 큰 틀에 있어서 구별하고 있는 발표문의 기본 입장이 보다 더 분명하게 관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에 관련해서는 특히 다종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전달하는 매체와 기술 등의 발전을 표준안의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며, 최근 Bluebook의 수차례의 개정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⁷⁾ 이 점에 관하여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견해나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VI. 그 밖의 질문

발표문은 법률문헌 인용형식 외에 논문 작성형식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관하여 발표자의 상세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 <https://www.law.cornell.edu/citation/7-200> 참조[Bluebook의 최근 개정(제17-21차) 사항 요약].